

##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 15 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12. 28 (수요일), 14:00 ~ 18:3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7호
- ▣ 출석위원 : 최성락, 고희령, 김권구, 성종상, 심정보,  
이재범, 한필원(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과주 덕진산성 사적 지정	(공 개)
2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외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공 개)
3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및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경관조명 공사	(공 개)
4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설치	(공 개)
5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도로 개설	(공 개)
6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주변 학교시설 증축	(공 개)
7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자원순환관련시설 (야적장)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8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주변 송전 첩탑 설치	(공 개)
9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가축시장 조성	(공 개)
10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 개)
1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주변 서부내륙고속도로 개설	(공 개)
12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주변 남측 정면부 정비	(공 개)
1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공 개)
14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내 관람객 탐방로 조성	(공 개)
15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16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7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18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외 1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19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외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0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1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2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3	사적 제194호 서울 헌릉과 인릉 주변 장애인 공용 주차장 설치	(공 개)
24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사무소 건립	(공 개)
25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조성	(공 개)
26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7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종교시설 (사찰) 건립	(공 개)
28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주차장 조성	(공 개)
30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자전거 도로 등 연장	(공 개)
3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노인복지시설 증축	(공 개)
32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	(공 개)
3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34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주변 공장 신축	(공 개)
35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가설건축물 설치	(공 개)
36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7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b>【검토사항】</b>		
38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복원 관련 고증기본 계획 검토	(공 개)
<b>【보고사항】</b>		
3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5-001

### 1. 파주 덕진산성 사적 지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파주 덕진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 「파주 덕진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16년도 사적분과 10차 위원회('16.10.12.)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16.10.25~11.24) 실시
  - 지정 예고 결과 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경기도 기념물 제218호  
(지정일 2007.10.22.)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 (3) 지정신청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 (5) 관리단체(안) : 경기도 파주시
- (6) 신청사유
  -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개축을 거듭하며 사용되었으며, 인근의 임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과 함께 임진강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 전략적 입지의 우수성 때문에 다시 외성을 확장 수축하여 사용되었던 중요한 유적임.
  - 국가 사적으로 승격하여 경기북부 고구려 유적을 연계하여 보존 정비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라. 지정조사 의견('15.09.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1) 문화재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덕진산성은 해발 85m인 비교적 낮은 산의 정상부와 이어지는 능선을 활용하여 축조한 성으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곽 중 가장 하류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 주변의 넓은 지역이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쪽으로 초평도와 임진나루 일대, 남쪽으로는 수내나루와 문산읍 장산리 일대에 대한 조망이 매우 좋아 북진을 막는 한편 남진에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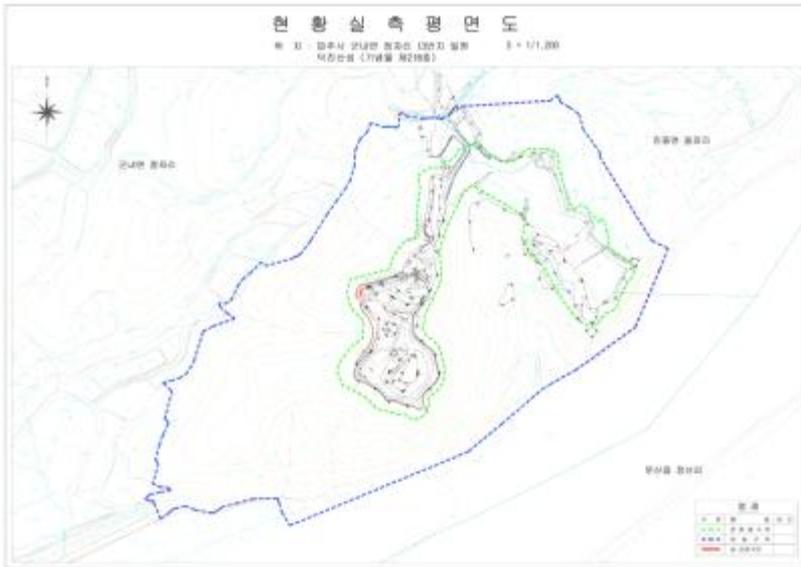
- 장수왕대 고구려의 남진과정 및 551년 이후 120여 년 동안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축성
-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이후 7세기 후반 나당 전쟁 종식 이후 신라가 진출하면서 고구려성을 확장하여 석축성으로 개축된 이후 9세기대에 전면적인 개축이 이루어짐
-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때에 능선을 따라 임진강변까지 쌓은 외성은 통일신라시대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석축으로 구축하고 내탁부를 흙으로 조성하였음.
- 인조반정 당시 장단부사였던 이서가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 발판을 마련
-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시기의 유적을 접할수 있고, 인근의 임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과 함께 임진강의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삼국시대 성곽임.
- 조선시대 지리지 「동국여지지」에 처음 소개
- 1994년 파주시 군사유적 지표조사(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2004년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2006년 남한의 고구려유적 -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국립문화재연구소)
- 2007년 경기도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경기문화재연구원)
- 2012년 덕진산성 1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 2013년 덕진산성 2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 2013년 덕진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여유당건축사사무소)
- 2014년 덕진산성 3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 2015년 덕진산성 4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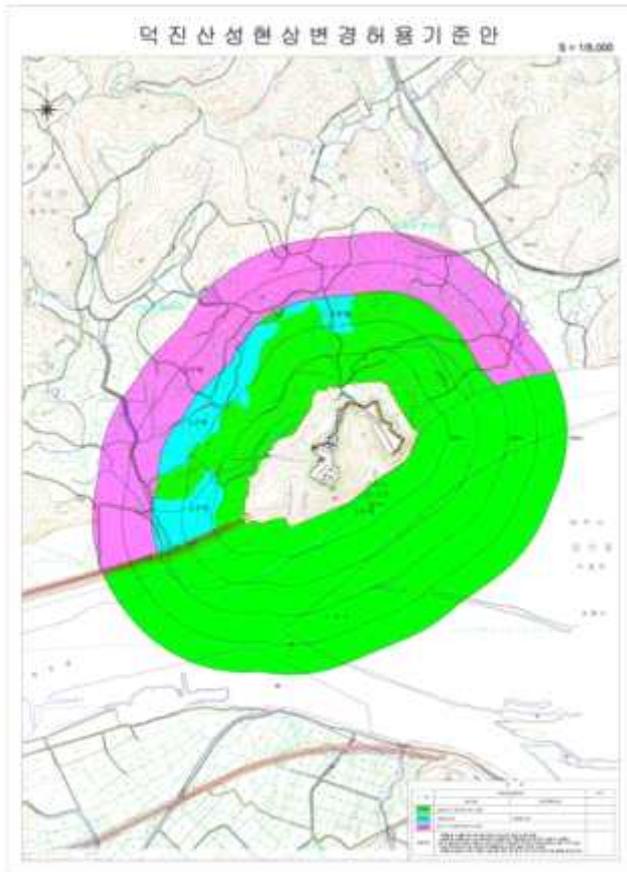
- 종별 : 사적
- 명칭(안)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사적의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을 고려해 볼 때,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10필지38,854㎡, 보호구역 26필지132,921㎡ (합계:36필지 171,775㎡) 신청함.
  - 검토의견: 지정·보호구역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4)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 허용</li> <li>○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 고구려 국경 방어의 요충지 덕진산성

- 덕진산성은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성곽 중 가장 하류쪽에서 발견된 유적으로서 장수왕대 고구려의 남진과정 및 551년 이후 120여 년 동안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축성 및 사용되었으며,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 고구려와 통일신라,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보고

- 초평도를 징검다리처럼 활용하여 임진강을 도하하기 유리한 지점을 조망할 수 있고, 파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관문인 임진나루와 주내나루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이후 7세기 후반 나당 전쟁 종식 이후 신라가 진출하면서 석축성으로 개축된 이후 9세기 대에 전면적인 개축이 이루어짐.
-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에 외성을 덧붙여 쌓아 강기슭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축성기술사 보고

### ○ 3차 발굴조사를 통하여 고구려 성곽의 전체규모 새롭게 확인

- 3차 발굴조사에서 고구려성벽이 통일신라 성벽이 구축된 구간 전체에 걸쳐 구축되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어 고구려 성곽의 규모는 600m 정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을 보면 판축 공법으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얇은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축부를 쌓을 때에는 할석이나 가공석을 사이 사이에 점토를 채워가면서 쌓는 ‘습식쌓기방식’을 특징으로 함.
- 3차 발굴조사에서 동문지 구간과 남벽구간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벽은 화강암이나 편마암 성들로 구축된 통일신라성벽과 달리 현무암 할석을 사용하여 습식공법으로 쌓은 성벽선이 확인됨으로써 덕진산성의 통일신라시대 성벽은 고구려 성벽의 흔적을 따라 구축되었음이 밝혀짐.

### ○ 통일신라의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인

- 덕진산성은 고구려 668년 고구려 멸망이후 7세기 말경 신라가 점령하여 기존의 고구려성곽을 견고한 석축성으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9세기대의 대대적인 수축 이외에도 구간에 따라 수차의 크고 작은 수개축이 있었음이 확인됨.

- 7세기 후반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성벽의 축성법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구려성벽의 토축부를 내탁부로 사용하거나 일부구간은 토축부를 조성하고 석축성벽을 조성함.

둘째, 석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대부분 편마암계통이며, 장방형으로 가공되었음을 특징으로 함.

셋째, 일반 성돌 보다 큰 대형의 지대석이 사용되었으며 기저부에 턱을 주어 성돌이 밀려나지 않도록 함.

넷째, 외벽 기저부에서 일정한 높이까지 성토한 후 성토구간의 바깥쪽에서부터 체성벽에 비하여 조잡한 할석으로 보축성벽을 구축함.

다섯째, 성벽의 회절구간에는 체성벽 구축이후 세장한 형태의 보축성벽을 덧붙여 쌓았으며, 남서쪽치(2치)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목주를 세우고 치를 구축하여 기동홈이 확인됨.

#### ○ 9세기대에 화강암으로 구축된 통일신라의 2차 성벽

- 출토유물이나 축성기법을 고려할 때 덕진산성은 9세기경 대대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축성벽은 덕진산성의 전체구간에서 확인되며 초축성벽과 축성기법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됨.

첫째, 2차성벽은 화강암을 전면가공한 성돌이 사용되었음. 지질도를 보면 인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화강암을 원거리에서 운반하여 사각추형태로 가공하여 쌓은 축성기법은 안성 망이산성이나 연기 운주산성 등 9세기대의 성벽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기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 1차 성벽의 보축성벽 바깥쪽에서 붕괴된 성벽을 따라 완경사를 이루도록 덧붙여 쌓았음. 이러한 형태의 축성기법은 연천호로그루나 당포성, 하남 이성산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기존성곽에 대한 특징적인 수축방법임.

- 이처럼 동일 유적에서 확인되는 명확한 성돌 재료와 가공방법 및 성벽 축조방법의 변화양상은 우리나라 축성기술사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음.

#### ○ 3차발굴 결과 조선시대 광해군대의 외성 문지와 축성법 확인

- 덕진산성의 동문부근에서 연결되어 능선을 따라 임진강변에까지 이르도록 쌓은 외성은 1623년 장단부사인 이서가 수축하여 쌓은 성으로 추정되므로 자료가 많지 않은 17세기초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음. 3차 발굴조사 결과 외성의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석축으로 구축하고 내탁부를 흙으로 조성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축성법이 확인되었음.

- 조선시대의 덕진산성은 山城뿐 아니라 津城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었고, 성벽이 연결되는 강변에 접안시설과 관리시설이 잘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조선시대의 진성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

이외에도 덕진산성은 인조반정 당시 장단부사였던 이서가 700여명의 반군을 비밀리에 훈련시켜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인조반정이나 이서장군 관련 역사기록이나 설화 등 다양한 口碑 자료를 콘텐츠로 개발할 경우 고구려 성곽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개발과 개발에 따른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적지정 필요

- 덕진산성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위치하여 지금까지는 잘 보존되어오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농경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변지역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덕진산성과 지근거리에서 고구려 성으로 확인되는 동파리보루가 최근 발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원형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덕진산성 인접지역까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유산의 보호가 필요함.

### (5)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현상 보존 유지관리 우선

- 덕진산성은 발굴조사만 이루어졌으며, 유구에 대한 정비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 발굴조사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성격, 시대, 규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성급한 복원은 옛 성벽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발굴조사된 성벽을 잘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우선적으로 성벽을 훼손시키는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

#### ○ 현상 보존 상태에서 훼손 원인 제거

- 덕진산성은 조선 중기 이후 성의 기능을 상실한 후 관리가 되지 않아 성벽 상부 및 주변으로 수목이 자라고, 성내 배수로 역시 유실되어 수백 년 동안 방치된 결과 성벽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성벽의 현상을 보존 유지한 상태에서 성벽의 훼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성벽 및 주변의 수목제거와 성내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성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성벽 주변 훼손 요인 정비 및 본격적인 정비 여건 조성 후 정비 추진

- 본격적인 유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와 정기적인 정비 및 점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하여 성벽 주변에 대한 수목 정비 등 기초적인 정비가 필요함.
- 곽경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훼손 원인 제거 후 탐방로 조성, 성 외측 경관 확보를 위한 수목 제거, 성 외측 붕괴된 성돌 정리 작업 및 성벽 정비,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 전망대 설치 등의 추진이 필요함.

(6) 종합 의견

○ 고구려 국경 방어의 요충지

- 임진강 유역의 호로그루·당포성·은대리성 등 고구려 성곽 중 가장 하류쪽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으로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축성 및 사용된 핵심적인 고구려 유적으로서 3차 발굴조사를 통해 내성 600m 구간이 고구려 성벽임이 명확히 밝혀짐.

○ 고구려와 통일신라 축성기술의 보고

-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이후, 이곳에 신라가 진출하면서 9세기경 대대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진 2차 성벽은 인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화강암을 원거리에서 운반하여 사각추형태로 가공하여 쌓은 축성기법과 1차 성벽의 보축성벽 바깥쪽에서 붕괴된 성벽을 따라 완경사를 이루도록 덧붙여 쌓는 기법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적인 수축 방법은 물론 우리나라 축성기술사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3차발굴 결과 조선시대 광해군대의 외성 문지와 축성법 확인

- 덕진산성의 동문부근에서 연결되어 능선을 따라 임진강변에까지 이르도록 쌓은 외성은 1623년 장단부사인 이서가 수축하여 쌓은 성으로 추정되므로 자료가 많지 않은 17세기초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3차 발굴조사 결과 외성의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석축으로 구축하고 내탁부를 흙으로 조성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축성법이 확인됨.

※ 이와 같이 파주 덕진산성은 현 잔존 상태가 양호하며, 고구려·통일신라·조선에 이르는 축성법의 변화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05/문화재위원 ○○○, ○○○)

- 덕진산성은 삼국시대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후 통일신라시대 보축·개축되고 고려시대에도 사용되며, 조선시대에 외성이 축조되는 등 장기 지속적으로 사용된 성으로서, 임진강 수로와 덕진을 조망하고 지키던 전략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임.
- 현재의 내성 속의 내측에 있는 성벽이 고구려성으로 판단되며 그 외곽에 통일신라기 성곽이 축조된 양상이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외성이 축조되었음. 시기별 축성기법 연구에도 가치가 큼.
- 성곽의 구성요소로서 성벽, 치, 집수지 등의 시설이 확인된 여러 시기에 걸친 중요한 유적으로서 잔존상태도 양호함.
- 또 덕진산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파보도 인근에 존재하여 산성과 보의 관계를 잘 보여주어 주목됨.
- 상기의 사유로 볼 때 국가 사적으로의 가치가 충분함.

(2)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sup>2</sup>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1	군내면 정자리	280-1	전	536,849	311		
2	군내면 정자리	791	도로	2,571	582		
3	진동면 동파리	560-1	하천	1,284,749	45		
4	진동면 동파리	1744	도로	5,303	47		
5	군내면 정자리	13	임야	103,716	20,848		
6	군내면 정자리	1	전	6,757	2,467		
7	군내면 정자리	2	전	9,150	9,150		
8	군내면 정자리	3	임야	5,177	1,542		
9	진동면 동파리	1597	임야	9,081	3,607		
10	진동면 동파리	1600	전	255	255		
계				1,963,608	38,854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면적: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1	군내면 정자리	280-1	천	536,849	2,572		
2	군내면 정자리	791	도로	2,571	285		
3	진동면 동파리	560-1	하천	1,284,749	593		
4	진동면 동파리	1744	도로	5,303	60		
5	군내면 정자리	792	구거	325	325		
6	군내면 정자리	6	전	1,332	1,332		
7	군내면 정자리	12	임야	2,886	2,886		
8	군내면 정자리	13	임야	103,716	82,868		
9	진동면 동파리	1541	임야	813	66		
10	군내면 정자리	11	전	3,170	3,170		
11	군내면 정자리	1	전	6,757	4,290		
12	군내면 정자리	3	임야	5,177	3,635		
13	군내면 정자리	4	전	3,174	3,174		
14	군내면 정자리	26	전	1,656	1,656		
15	군내면 정자리	27	전	3,461	3,461		
16	군내면 정자리	28-1	묘지	198	198		
17	군내면 정자리	5	대	479	479		
18	군내면 정자리	25	전	6,298	6,298		
19	진동면 동파리	1585	전	1,372	1,372		
20	진동면 동파리	1597	임야	9,081	5,474		
21	진동면 동파리	1598	전	1,180	1,180		
22	진동면 동파리	1599	전	1,038	1,038		
23	진동면 동파리	1601	전	512	512		
24	진동면 동파리	1584-1	묘지	1,699	1,699		
25	진동면 동파리	1542-1	전	1,369	1,369		
26	진동면 동파리	1543-1	전	2,929	2,929		
계				1,988,094	132,921		

### (3)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 진주성 내외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주변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진주대첩의 역사성과 호국충절을 되살리기 위해 진주성과 연계한 기념광장 및 문화시설 조성
- 진주성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의 공간을 제공
-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관광행태를 유도하여 서부경남의 관광거점으로 조성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
- (3) 신청내용<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 위치 : 경남 진주시 본성동 10-4번지 외 159필지(문화재구역, 3구역)
  - 신청내용
    - 광장조성면적 : 25,020㎡
    - 지하주차장 : 408면/2층, 연면적 22,000㎡
    - 도로확장 : 길이 250m, 폭 2.75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12/문화재위원 ○○○, ○○○)
  - 상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 상부의 공원조성계획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관리·지상에의 표현방식·문화재 경관개선계획 및 고지형복원 계획 등의 요소가 포함되게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임

- 상기 계획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유적발굴조사계획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굴 후 유구의 가치의 잔존상태를 고려한 후 역사공원·광장의 조성방식과 공간배치가 변경·수정되어야 할 것임. 또 향후 광장조성부지에서 조사된 유구의 지상표시방법, 설명방법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도록확장부분(진주성 북쪽도로)은 단순히 그 확장부분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의 외곽 주차관리체계보완(Park & Ride)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면 문화재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 환경 저해 우려(유구 발굴 및 보존 방안 강구 필요)

### 3. 강화 삼랑성 및 강화산성 주변 경관조명 공사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경관조명 공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군 일원 강화산성, 삼랑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노후된 기설치 조명설비를 교체 하여 주민들의 야간 이용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 확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제14차 문화재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명 공사>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길상면 온수리(삼랑성)
  - 사업내용
    - 강화산성
      - 등기구 선로매설 : 외부성벽 - 1.1km, 내부산책로 일부
      - 제어반(3~14회로)▶ 5개소(동문,서문,남문,북문,남장대)
      - 각 문루 조명 : 성벽 및 문루 투광, 여장조명, 지붕투광 폴조명(각 4개)
    - 삼랑성
      - 등기구 선로매설 : 외부성벽 - 1.45km
      - 제어반(2~13회로)▶ 3개소(남문,동문,서문)
      - 동문 : 외부 성벽투광(72w-4개) / 남문 : 성벽 및 문루 투광, 여장조명, 지붕투광 폴조명(4개)

####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은 강화군 일원 강화산성, 삼량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노후된 기설치 조명설비를 교체 하여 주민들의 야간 이용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확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지역 문화유산 활용에 힘쓰고자 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위원 ○○○)

- 강화 삼량성의 경우 매우 어두워 전체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야간 경관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남문을 비롯하여 경관조명 설치 시 외부에서 삼량성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음
- 강화 산성의 경우 강화대교로 부터 진입 시에 강화읍의 방향을 알려주는 효과와 강화의 이미지 제고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내부조명은 비록 6W의 낮은 출력이지만, 남장대로의 야간 보행을 유도할 수 있어 북문은 제외하고, 남문도 여장의 일부, 서문의 일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자문의견('16.11/문화재위원 ○○○)

-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을 줄이고 조명시설과 전선의 설치·매립에 따른 문화재의 형질변경이 최소화되면서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배치하려고 노력한 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조명시설의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는지 검토요망되며 전선의 설치·매립이 필요한 구역의 최소화 및 유구없는 곳에서의 설치·매립의 측면에서 유구(추정)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점(예:해자 등)과 조명시설 설치 위치, 전선 매립위치를 도면에 중복해서 표시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진행방식에 대한 제시도 필요함
- 조명시설과 전선 설치시 도착지점은 사전 시·발굴조사가 필요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4. 강화 참성단 주변 하늘전망대 설치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참성단 보호를 위한 하늘전망대 설치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참성단(사적 제136호 / 1964.07.11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3) 신청내용<하늘전망대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현상	변경	비고
하늘전망대 (헬기장)	지름	8m	20m	최소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	목재데크,H빔	
산불초소	제원	1.2m	20m	기존초소위치이동

(4) 신청인 의견

- 강화 참성단은 폐쇄와 민원에 의한 개방을 반복하고 있는 문화재로 군비로 관리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나 1월1일 및 개천절 등 마니산 상단 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려 이완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에 있는 헬기장을 확대하여 관람객을 유도하고 비상사태에 따른 헬기장 사용 안전에 대비하고자 함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5.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에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부의함.
- 14차 회의('16.12.14.) 보류 :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632-4 일원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 등(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도로 개설(L=4.95km, B=30m, 교량 3개소, 왕복 6차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사업(L=1.7km, B=30m, 교량 1개소, 왕복 6차로)

구분	당초안('16.10.26.)	금회 신청안
노선연장	지정구역 280m	-
	1구역 60m	1-2구역 340m
	2-1구역 570m	2-1구역 560m
	3구역 90m	3구역 90m
	4구역 700m	4구역 710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6.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주변 학교시설 증축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사적 제487호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주변 보성초등학교 교사동 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주변에 초등학교 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당초 신청한 교사동 위치를 변경하여 신청한 사안임
- '16년 제11차('16.10월)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사적 제487호 / 2007.10.10. 지정)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일원
- (3) 신청내용<학교시설 증축공사>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29-1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3,258,0㎡
    - 건축면적 : 2,614.90㎡(기존건축물 1,663.17㎡, 435.68㎡ 감, 1,387.41㎡ 증)
    - 연면적 : 5,380.65㎡(기존건축물 2,583.37㎡, 435.68㎡ 감, 3,232.96㎡ 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물높이 : 14.50m(기존높이 7.85m, 6.65m 증)
- (4) 신청인 의견
  - 본 대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29-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도민과 학생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곳에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위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1.1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내용은 김정희 유배지와 관련 있으며, 대정현성 서벽에 인접해 있는 본관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 단층 유치원과 급식소를 헐고 3층 체육관 및 유치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임.
- 대정현성 서벽에 인접하여 3층 체육관을 신축할 시 서벽이 담장같이 왜소해질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축 건물지는 시굴조사 필요
  - 본관 건물은 1층씩 증축

## 7.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에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변경 허가를 신청함
  - “주기장 설치” 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득함('15.11월)
  - 2차 사적분과 위원회('16.2.17)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차 사적분과 소위원회('16.3.23) 가결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32호 / 1990.08.21.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외
- (3) 신청내용<자원순환관련시설(야적장) 기반시설 보강공사>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53-1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
  - 건축규모

구분	기존 허가사항('16.3월)	변경 신청사항('16.12월)
대지면적	8,890㎡	좌동
건축면적/높이	450㎡(150㎡ 3동)/최고 3m	좌동
기반시설	-	- 법면설치(잔디) : 도로부분면적 380㎡, 인접경계부분면적 300㎡, 높이 1.2m - 울타리설치 : 높이 2.1m/길이 96m - 진입로 : 6m 폭 확장/길이 90m

○ 공사계획

구분	세부내용	면적	비고
토 공	흙깎기	6501m <sup>3</sup>	
	흙쌓기	1666m <sup>3</sup>	
	터파기	642m <sup>3</sup>	
	되메우기	484m <sup>3</sup>	
	잔토	4994m <sup>3</sup>	
배수공	우수관	263m	D300(PE이중벽관)
	우수맨홀	5EA	
	플롭관	286m	D300
	집수정	5EA	
포장공	기존측구 복개	130.0m	B=1.2m
	콘크리트포장	1064m <sup>2</sup>	
	골재포장	3796m <sup>2</sup>	
구조물공	웬스설치	96m	H=1.2m

○ 토공계획

공종	단위	수량	비고	
토 공				
흙 깎 기	토 사	m <sup>3</sup>	6501.1	자연상태
흙 쌓 기	토 사	m <sup>3</sup>	1665.8	자연상태
터 파 기	토 사	m <sup>3</sup>	642.4	자연상태
되 메 우 기	토 사	m <sup>3</sup>	483.5	자연상태
사 토	토 사	m <sup>3</sup>	4994.3	자연상태
법면보호공	줄 때	m <sup>2</sup>	751.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도로·울타리의 설치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면에의 잔디식재에 있어서는 사적지인 “검단리 유적” 방향으로의 법면 잔디 식재는 형질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2) (기존 허가시)현지조사의견('16.03.04/문화재위원 ○○○)

- 상기 사업구역은 1구역이며, 문화재 이격거리는 100m임
- 그러나 사업구역은 4단계로 단이 저서 문화재로부터 고도 차이가 많이 나며 인근 지구는 대부분 공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임

-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건축 입지도 문화재로부터 떨어지게 조정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개발정도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됨

### (3) 유사사례

- 울주 검단리유적 주변 공장신축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08.11월) 취소소송에서 우리 청 승소('11.2월/2010두24456)
  - 신청내용 : 공장신축(2동, 지상1층, 대지면적 7,258㎡, 건축면적/연면적 1,090㎡/1,090㎡, 최고높이 6.5m)
- 울주 검단리유적 주변 소매점신축 허가신청(○○○) 불허처분('15.5월)
  - 신청내용 : 소매점신축(2동, 지상1층, 대지면적 8,366㎡, 건축면적/연면적 986.4㎡/986.4㎡, 최고높이 6.6m)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8. 양주 대모산성 주변 송전 철탑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주변 송전 철탑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양주 대모산성 주변에 송전 철탑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2015년 사적 분과 제9차 회의('15.11.11.) 심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선로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송전 철탑 설치>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
  - 사업내용
    - 345kv 철탑 2기 신설
    - 시설면적 : 1,454㎡
    - 시설높이 : 각 112.0m, 137.8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9.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가축시장 조성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에 가축시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14차 위원회('16.12.14)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현지조사('16.12.21) 후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안성 도기동 산성(사적 제536호 / 2016.10.24.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 일원
- (3) 신청내용<가축시장 조성>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3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0m 이격)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9,174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3,610.86m<sup>2</sup> / 3,430.75m<sup>2</sup>
    - 동별개요

동별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용도	가축시장	부속창고	부속식당	차량소독기	기계실
면적	2,009.25m <sup>2</sup>	1,096.00m <sup>2</sup>	198.00m <sup>2</sup>	120.00m <sup>2</sup>	7.50m <sup>2</sup>
층수	1층	1층	1층	1층	1층
높이	13.30m	8.20m	5.20m	5.52m	3.00m
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사항은 도기동 산성에서 360m 정도 이격된 곳에 가축 경매장을 신축하려는 사항이나, 신청지가 산성에서 조망되고, 신청사항이 대규모 절성토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신청사항은 도기동 산성에서 내려다보는 저평하고 자연스러운 지형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0.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4.08.28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4.09.25 보류 : 새로운 교각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유무 확인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사적 제43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외
- (3) 신청내용<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004-2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9m 이격/2구역(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사업내용(5공구 전체)
    - 노선연장 : 연장(전체) 12,415m
      - 동해남부선 : 진기(현)113km 105.89~진기(현)118km 320.00(L=5km214.11)
      - 중앙선연결 : 영기(현)20km 420.00~영기(현)26km 278.34(L=5km 585.34)
      - 건천삼각선 : 0km 000.00~1km 343.20(L=1km 343.20)
    - 구조물 현황
      - 토공 : 본선구간 3개소, 중앙선구간 8개소(L=2,779m)
      - 교량 : 6개소 (L=4,743m)
      - 모량제1교 : 100m

- 모량제2고가 : 1,671m
- 제내천교 : 130m
- 대곡제1교 : 872m
- 대곡제2교 : 503m
- 대곡제3교 : 1,467m
- B(함) : 5개소
- C(함) : 4개소
- 터널 : 4,893m(2개소)
  - 화천제2터널 : 2,343m
  - 용명터널 : 2,550m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내 구조물 현황>

- 교량(1개소) : 대곡제1교(872m중 526m 문화재 검토대상 구간)
  - A-A : 333m, B-B : 193m
- 해당교량연장 L=526m
  - A-A : L=333m, 교량상부 폭 복선구간 10.9m, 단선구간 6.0m
  - B-B : L=193m, 교량상부 폭 6.0m(단선)
- 최고높이 A-A:13.3m(전차선 포함 22.5m), B-B:20.7m(전차선 포함 29.9m)
- 교각 20개(직접기초), 슬라브 19경간(40m\*1경간, 32m\*1경간, 30m\*12경간, 25m\*2경간, 16.5m\*2경간, 11m\*1경간)
  - A-A : 교각 13개(파일기초), 슬라브 12경간(30m\*10경간, 16.5m\*2경간)
  - B-B : 교각 7개(파일기초, 직접기초), 슬라브 7경간(40m\*1경간, 32m\*1경간, 30m\*2경간, 25m\*2경간, 11m\*1경간)

(4) 신청인 의견

- 영남권 순환 철도망 및 대구선과 연계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및 경부고속철도 연계 전철망 구축
- 수송능력 제고와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1. 익산 쌍릉 주변 서부내륙고속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주변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설 및 연결로 확장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쌍릉 주변에 서부내륙고속도로 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및 동익산 나들목 연결로 확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석왕동 산55, 산56

(3) 신청내용<도로개설>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왕동 102-1번지(도로신설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3구역), 덕기동 366-2번지 일원(연결로 확장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3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구분	통과연장	토공		구조물	포장공			도로폭	도로증가높이	허용기준	비고
		깎기	쌓기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				
고속도로신설	360m	4,958m <sup>2</sup>	33,820m <sup>2</sup>	2개소/ 42.0m	-	7,263m <sup>2</sup>	-	23.4m	2.5m	3구역	4차로 신설
연결로 확장	80m	915m <sup>2</sup>	973m <sup>2</sup>	-	4,849m <sup>2</sup>	-	2,270m <sup>2</sup>	19.0m	-	5구역	2차로→ 4차로변경

○ 사업기간 : 2027. 12월 ~ 2032. 12월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익산쌍릉에서 북측으로 450여m 이격된 곳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익산 쌍릉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으나 일부 절토와 고가로 구성된 도로가 계획되고 있음
- 그리고 금번 도로계획 이외에도 문화재주면(익산토성, 익산쌍릉, 익산왕궁리 유적, 익산 제석사지 등)에서 문화재와 문화재 시야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로 등이 계획되고 있어, 이러한 도로계획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관리단체 의견

- 본 사업은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3구역, 5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에 고속도로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임
- 당해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3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 주변경관 및 보존상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상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도로 높이 조정 필요)

## 12. 익산 미륵사지 주변 남측 정면부 정비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남측의 관람객 동선 유도 및 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람객 동선을 유도하고,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남측지역의 관람객 편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기 허가받은 익산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미륵사지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정비 및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기양리 32-2 일원
- (3) 신청내용<기 허가받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남측지역 관람객 편의공간 조성>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760 외(1, 2구역)
    - 익산 미륵사지 남측지역 관람객 편의공간 조성지역 : 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익산 미륵사지지구관광지 구역 : 2구역(익산미륵사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 익산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 변경내용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b>총계</b>	<b>108,743</b>	<b>변동없음</b>	<b>100.00</b>	
<b>공공편의시설지구</b>	<b>42,960</b>	<b>66,560</b>	<b>61.3</b>	
공공주차장	5,488	20,325	18.8	3개소
도로	17,068	22,860	21.0	
광장	20,404	22,625	20.8	
편의시설	-	750	0.7	화장실 1개소, 안내소
<b>상가시설지구</b>	<b>5,170</b>	<b>6,120</b>	<b>5.6</b>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5,170	6,120	5.6	
<b>휴양문화시설지구</b>	<b>-</b>	<b>1,300</b>	<b>1.2</b>	
전통문화체험관	-	1,300	1.2	1개소
<b>기타시설지구</b>	<b>60,613</b>	<b>34,763</b>	<b>31.9</b>	녹지 30% 이상 확보
자연지형녹지	59,146	27,668	25.4	
완충녹지	1,467	6,100	5.6	
하천	-	995	0.9	

· 사업기간 : 2006년 ~ 2019년(변동없음)

· 사업내용 : 광장, 주차장, 자연지형공원, 경관녹지, 전통음식점, 관람객 편의시설 등(변동없음)

○ 익산 미륵사지 정면부(남측) 관람객 편의공간 조성

- 사업면적 : 약 20,000m<sup>2</sup>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 사업내용 : 미륵사지 종합관광안내소(방문자센터), 화장실, 관리실, 미륵사지 자료관, 소회의실 설치

라.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의견('16.10.28/문화재위원 ○○○)

○ 지적 경계선에 관계없이 세 필지를 통합하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함

○ 옛 수계를 회복하고 미륵사지 본 영역이 왜소화되지 않도록 스케일(계획)을 조절하여 전면부에서 유적이 가시되도록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계획

○ 전면 중앙광장은 넓은 잔디광장정도로 마감하여 다리는 난간없이 지면과 같은 높이로 마감

- 서쪽 끝 도로 건너필지에 관람편의시설을 집중하고, 광장양쪽부분은 작고 조용한 용도의 관광지원 및 서비스 시설을 배치함이 타당함
- 주차장은 양쪽 끝으로 배치하되 서쪽 주차장은 박물관 주차장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계획

(2) 전문가 자문의견('16.11.08/문화재위원 ○○○)

- 미륵사지 남측 정면부 광장계획은 지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광장 전면의 미륵사지 관광지계획 및 국립익산박물관 계획과 통합해서 검토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옛 수계의 회복은 동선을 유도하며 공간을 통합시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물길과 진입다리와의 관계는 진입축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미륵광장의 잔디마감은 전면광장의 공간 분리, 광장의 활용, 유지관리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필요
- 미륵사지 당간지주를 형상화한 진입부 조형물의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유적과 혼돈)
- 광장 좌측 관광편의시설의 위치는 박물관 외부공간과의 연계 및 박물관 진입경관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 검토 필요
- 우측 주차장과 미륵광장 사이의 관광편의 시설은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좌측 주차장은 박물관 주차장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야 하며, 주차장에서 미륵광장까지의 자연스러운 동선유도는 관람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3. 익산 미륵사지 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에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15.11.11(수)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계획 보고 : 접수(설계 검토 시 문화재위원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 (3) 신청내용<국립익산박물관 건립>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문화재구역)
  - ※ 기존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대한 증축
  - 사업내용
    - 건립 목적
      - 익산지역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보존·전시·운영·교육 공간 조성
      - 익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집대성, 활용 통한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지역주민과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제고
    - 대지면적 : 39,695㎡(증축 및 기존유물전시관 지역 포함)
    - 증축 규모(증축 1동(지하2층 지상1층))
      - 철근콘크리트 / 굴착 14.93m, 높이 5m(기존 지면 대비)
      - 건축면적 : 4,034.92㎡ / 연면적 : 7,693.03㎡

## 라. 참고사항

### (1) 전문가 자문의견('16.07.06/문화재위원 ○○○)

- 기본적으로 박물관 건물이 문화재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어야 함, 규모가 커 보이는 요소를 배제하고 유적을 직설적 해석보다는 의역하여 반영하는 것이 기존 건물과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면형태 및 재료는 단순하고 소박하되 초라하지 않고 세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유리 및 원색계열 사용을 자제, 가능하면 무광택·무반사·무채색 계열을 사용하되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설계가 필요함

### (2) 전문가 자문의견('16.07.07/문화재위원 ○○○)

- 건립에 있어서 건물의 높이 및 경관이 크게 문제화 될 수 있음, 높이문제는 석탑의 가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경관문제는 넓은 면적의 점유로 인하여 지표 및 지형상태가 많이 변경될 소지가 크므로 최대한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 및 방안모색이 필요
- 세계유산은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뉘짐, 세계유산구역에는 박물관 설치가 불가하므로 필히 구역범위를 확인하고, 세계유산보호관리계획에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지침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관리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3) 전문가 자문의견('16.10.07/문화재위원 ○○○)

- 현상안에 비해서 지붕면적은 줄었지만 체감하는 매스 볼륨은 더 커보임, 현상안은 지붕레벨이 지면에서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노출되는 면이 적었지만 현재안은 사면이 모두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건물이 더 거대해 보이는 단점이 있음, 사적지에 건축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상안에 비해 더 열악한 안이라고 사료됨
-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해 보임, 대지 여건상 대부분의 실을 지하화할 경우 진입동선 구성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설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입면 재료의 경우 석탑과 대비되고 가벼운 재료를 선택하여 석탑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함

### (4) 전문가 자문의견('16.10.31/문화재위원 ○○○)

- 건물의 가능하면 지하화하고 꼭 필요한 코어 부분만 지상에 노출시킨다고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좀 더 방안을 찾아볼 필요 있음, 현재 건물 사방이 높이는 낮아도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거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유적을 왜소화 할 수 있음

- 동남측 모서리 처마 돌림 부위의 기능상 필요여부, 단순 형태적인 요소라면 지면과 맞게 계획 검토, 기능상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한 접근차단장치 등 필요
- DA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관람객의 안전성 및 가시성 지하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계획됨
- 기능 없이 강조된 형태 중심의 표현요소를 최대한 자제하고, 키 높이 이하의 돌출처마 계획시 처마하부에서의 안전성을 감안한 접근차단 방안을 강구할 것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재생에너지는 문화재 보존 환경을 저해하므로 면제 필요(단,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설계 권고함)

## 14. 공주 석장리 유적 내 관람객 탐방로 조성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내 탐방로 조성을 위한 탐방데크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내 관람객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영역의 활용도 제고 및 편의를 위한 탐방로 조성 및 미끄럼틀을 설치하고자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15번지
- (3) 신청내용<탐방로 조성>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15번지(문화재구역)
    - 발굴체험장 후면 임야
  - 사업목적
    - 공주 석장리 유적 내 활용공간 확대를 위하여 관람객의 관람동선을 야외로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탐방로 조성
    - 관람객의 유적 관람 동선 확대를 위해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으로 차폐된 공간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
  - 사업내용
    - 탐방로 : 폭 1.5m, 길이 110 m
    - 데크로드 : 폭 1.8 m, 길이 50m
    - 데크(2기) : 3.3m × 4.8m / 4.8m × 4.8m
    - 미끄럼틀 : 폭 0.55m, 길이 70.9m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7월

## 라. 의결사항

###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 15.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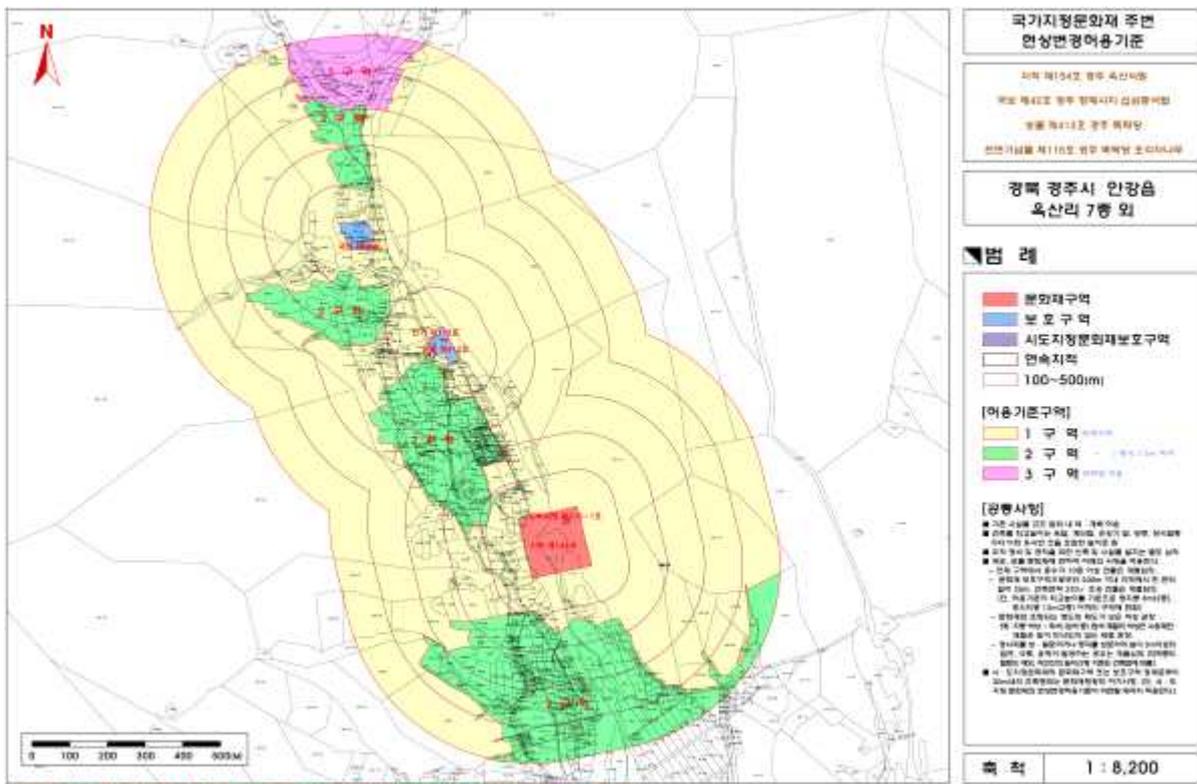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경주 옥산서원 등 5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 '16.12.14. 보류 : 자료확인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등 5건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옥산리)
- (3) 신청내용<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li> <li>○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ul> </li> <li>○ 시·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단,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li> </ul>		



\* 본 도면은 실체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 확인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위하여,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신청안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6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18호 경주 귀후재)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지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단, 축사의 경우 100m 이내의 경우 해당)</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2) 지자체 의견

### <시설제한 중 축사에 한정하여 거리(100m 이내)에 따른 심의 적용>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경관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 허용기준 범례의 공통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 3)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허용기준 공통사항에는 시설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해당되며, 금번 허용기준 조정 현지조사에서는 거리 및 구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관계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는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제한 시설 중 축사는 도축장 및 도계장과는 달리 경주 지역의 농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체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농가에서 설치된 축사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경주시에는 말소, 폐업, 휴업된 상태를 제외하고 관내 전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가 2,88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시설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수요의 현상변경 신청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의 제기와 함께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설 제한 중 축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개별 심의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조정 고시되는 허용기준에 따라 축사의 신축(양성화 포함)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 개선이라 판단합니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6. 순천 낙안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여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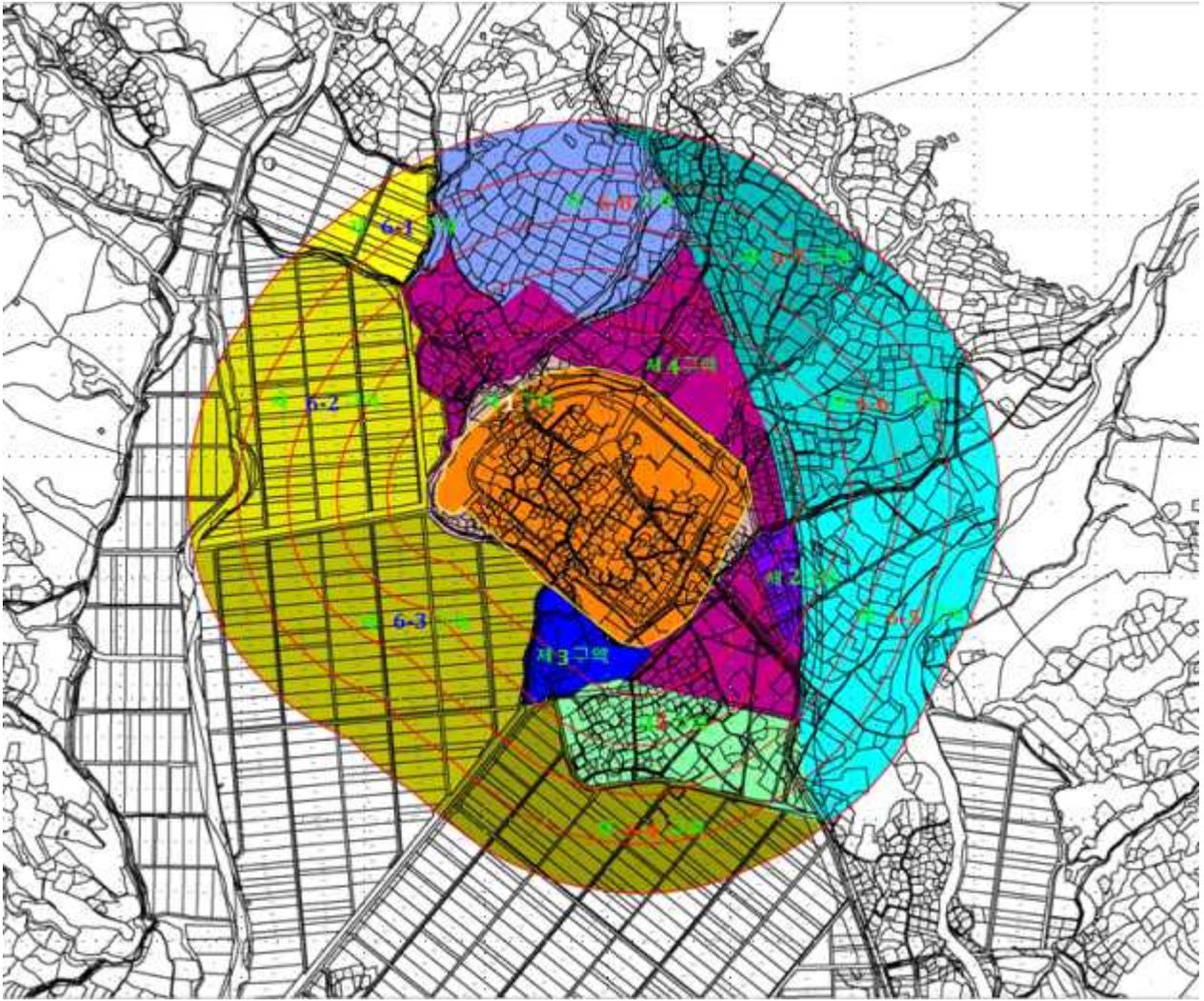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일원
- (3) 신청내용<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구분	명 칭	구조	지붕	용도제한 (가능용도)	지상높이 (최고높이)	비고
1블록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토벽, 목조	전통초가	· 전통초가(주택)		· 기존 주택의 규모내에서의 개·보수는 가능하나 신축은 불가함. · 안건별 문화재청 심의.
2블록	상업구역 (준 전통한옥 구역)	토벽, 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 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 미용실, 의원, 약국, 일반음식점, 사무소, 세탁소, 사진관 등)	단층 6.2m 이하	· 장기적 6-5블록으로 이전 추진 후 녹지공간으로 조성
3블록	문화시설 및 문화체험구역 (전통한옥구조, 전통한옥외관구역)	토벽, 목조	한옥 (초가, 기와)	· 박물관시설 ·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7.9m 이하 (단, 전통한옥형식만)	· 안건별 문화재청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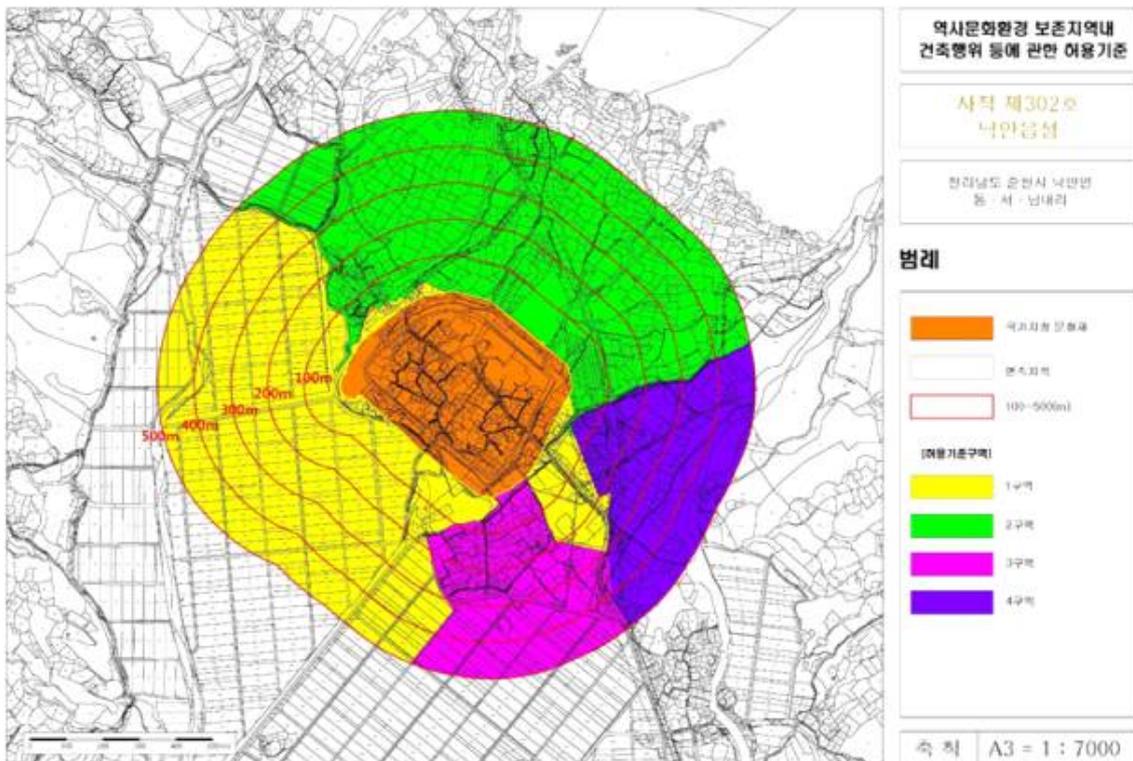
구분	명 칭	구조	지붕	용도제한 (가능용도)	지상높이 (최고높이)	비고
4블록	주거 및 근생구역 (전통한옥외관 구역)	토벽, 목조, 조적조	한옥 (초가, 기와)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 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 미용실, 일반음식점 등)	단층 6.2m 이하	· 주거지 형성지역으로 기존 건물구조, 지붕, 높이 한도내에서 가능
5블록	주거 및 근생구역Ⅱ (전통한옥외관 구역)	토벽, 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 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 미용실, 일반음식점 등)	단층 6.2m 이하	· 주거지 형성지역으로 기존 건물구조, 지붕, 높이 한도내에서 가능
6-1 ~4 블록	기타구역 (준 전통한옥 외관구역)	토벽, 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 기존 건물의 개·보수만 허용하고 현 상태로 보존.
6-5 블록		토벽, 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 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 미용실, 병원, 의원, 약국, 일반음식점, 사무소, 세탁소, 사진관등) ·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7.9m 이하	· 장기적 상업지역 조성예정부지 · 세부필지 추후확정 · 상업지역인 관계로 건물구조, 지붕, 높이, 용도 제한 완화
6-6 ~8 블록		토벽, 목조, 조적조, 철콘	한옥 (초가, 기와)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중(슈퍼마켓, 일용품점 등 소매점, 이, 미용실, 병원, 의원, 약국, 일반음식점, 사무소, 세탁소, 사진관 등)	단층 6.2m 이하	· 전, 담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단독주택, 소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함

구분	명 칭	허 가 기 준	비 고
공통 사항	0~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형태는 곡선형(초가지붕형)으로 하되 기와지붕인 경우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처리.</li> <li>- 건물외관(벽체, 창호, 지붕)은 삼원색의 사용은 지양하고 낙안읍성의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함.</li> <li>- 건물 신·재·개축시 대지면적의 10%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수목(전통수종)을 식재.</li> <li>※ 건물의 최고높이는 현 G·L선을 기준으로 한 최고 돌출부의 높이를 의미함.</li> <li>- 지하층 설치시 지양(설치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처리)</li> </ul>	



○ 신청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li> </ul>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순천 낙안읍성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방위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일괄하여 같은 높이 개념을 일괄하여 정리하였음.
- 경관 지표에 따라 낙안읍성을 검토 할 때, 전면 남문지 주변의 농경지와 동문 진입(현 주차장 등)은 경관과 일체성의 관점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북측은 일체성에서 마루선과 지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1층 규모까지 허용하더라도 경사지붕만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동측의 진입 동선에서 기 개발된 남측 구역은 기 개발된 상황을 고려하여 1층 규모로 하되 평지붕(높이 5m)과 경사지붕(높이 7.5m)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위쪽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2층 규모로 하되, 평지붕(높이 8m)과 경사지붕(높이 12m)을 허용 한다면 합리적인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17. 양주 온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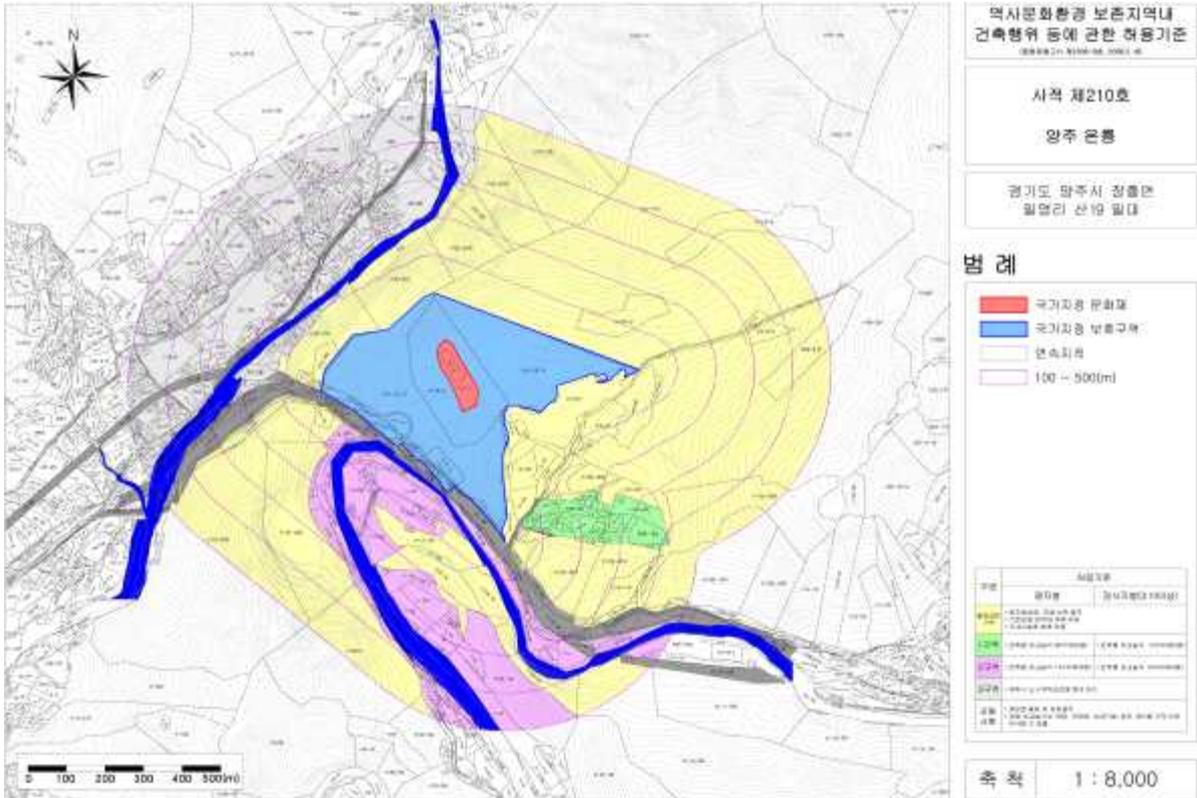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양주 온릉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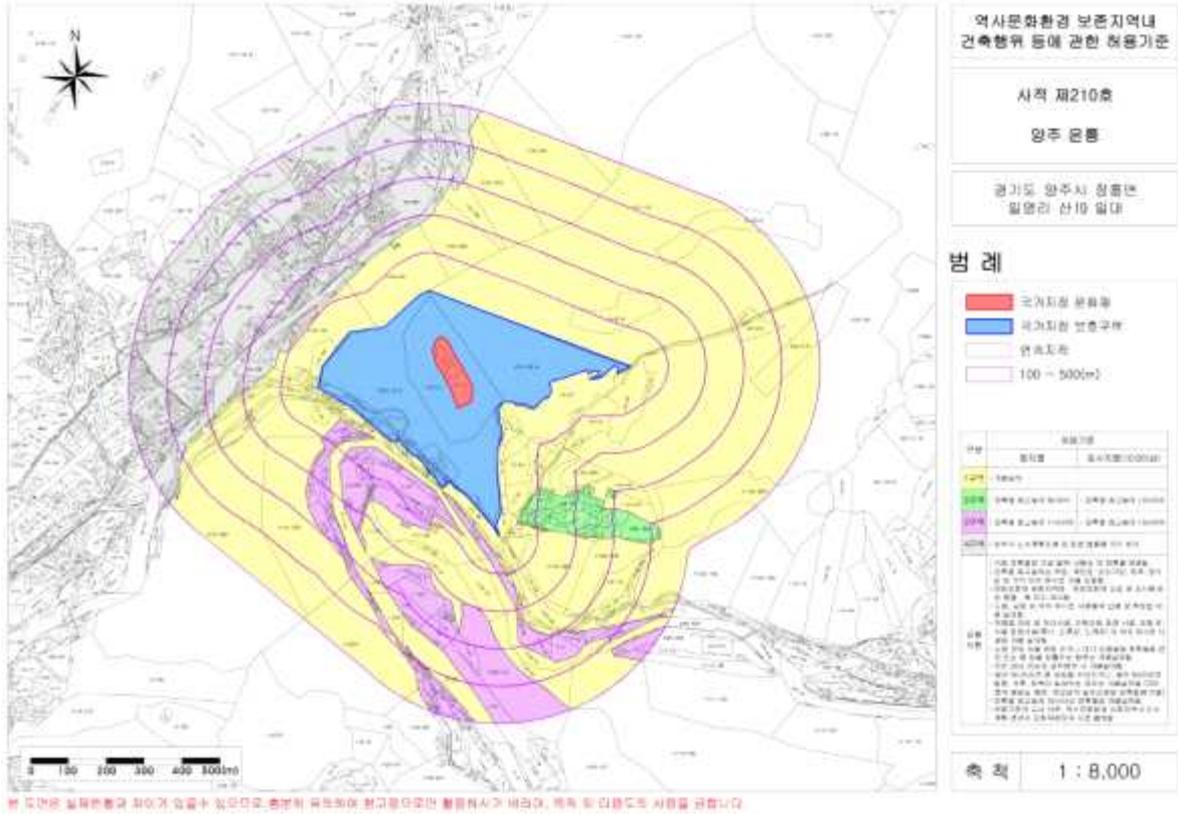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제210호)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절대보존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지형 보존, 건물 신축 불가</li> <li>○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 허용</li> <li>○ 군사시설에 한해 허용</li> </ul>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3구역	○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li> <li>○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ul>		



○ 신청안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0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양주 온릉의 기존의 허용기준을 유지하되 고개 남쪽 도로지변을 모두 개별 심의 구역으로 함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18. 남양주 광릉 외 1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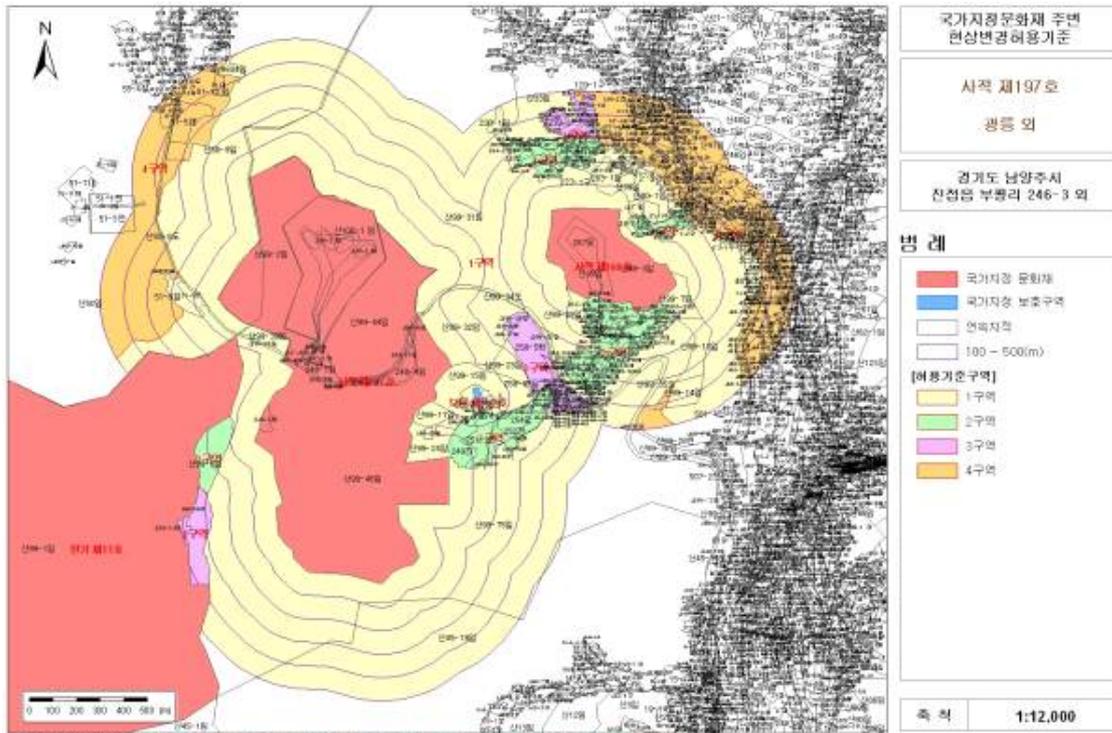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남양주 광릉, 남양주 휘경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 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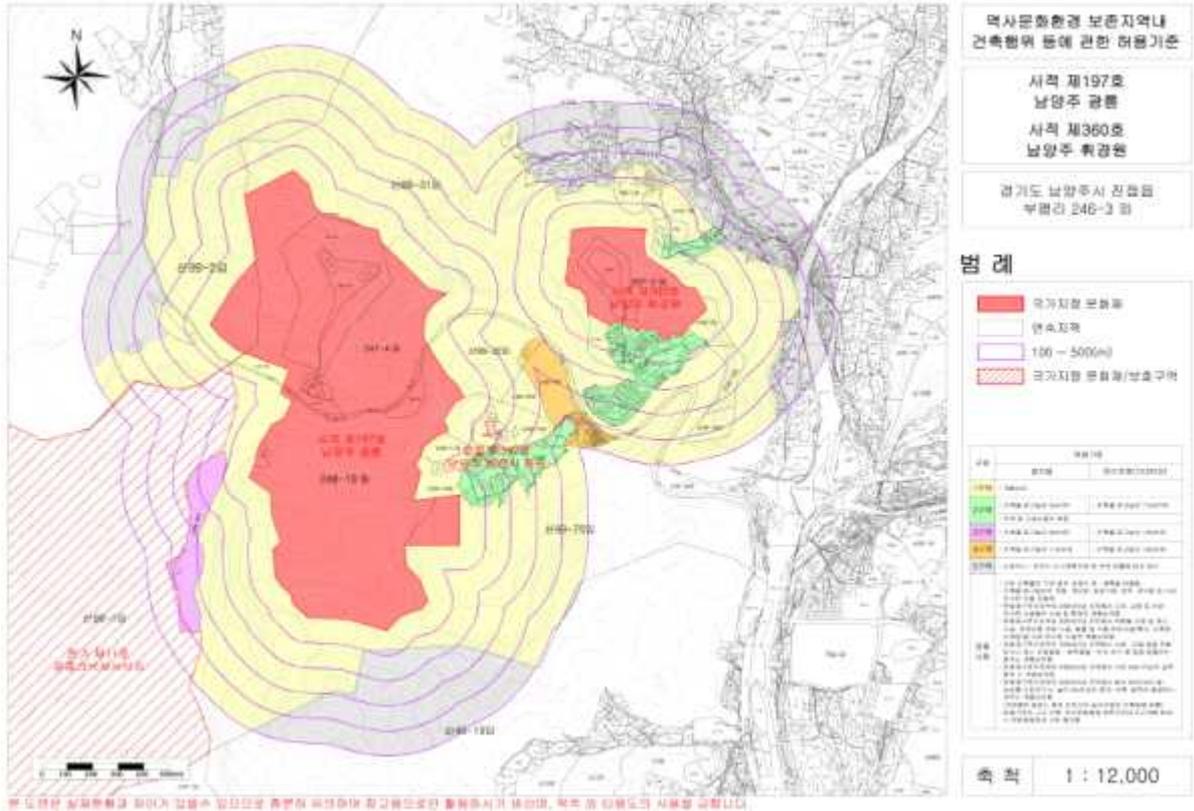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광릉(사적 제197호), 남양주 휘경원(사적 제360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 광릉수목원길 186번길 51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 (임업시험장, 사찰건물의 경우 개별심의) (수종갱신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주택 및 근생 시설만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 남양주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일부지역은 포천시에 포함되어 있음)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신청안

구 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남양주시·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 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1.1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남양주 광릉 회경원의 역사문화환경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릉 회경원 주변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음.
- 광릉은 전면으로 충분한 문화재구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측과 서측의 능선 너머는 일체성·조망성이 미미하므로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함. 그리고 동측의 계곡부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2구역(평지붕5m 이하/ 경사지붕7.5m 이하)은 2구역을 유지하되 회경원과 사이에 있는 계곡은 조망성이 미미하므로 3구역에서 4구역(평지붕11m 이하/ 경사지붕15m 이하)으로 완화하여도 무방함.
- 회경원은 주변의 연접한 일체화된 지형과 전면 진입공간은 현황을 유지하되, 북측·동측은 일체성·경관성의 영향이 미미하므로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단, 능과 원 주변에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지형이 변형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3m 이상의 절성토의 경우 개별심의 하는 내용을 공통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19. 남양주 사릉 외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외 3개소 주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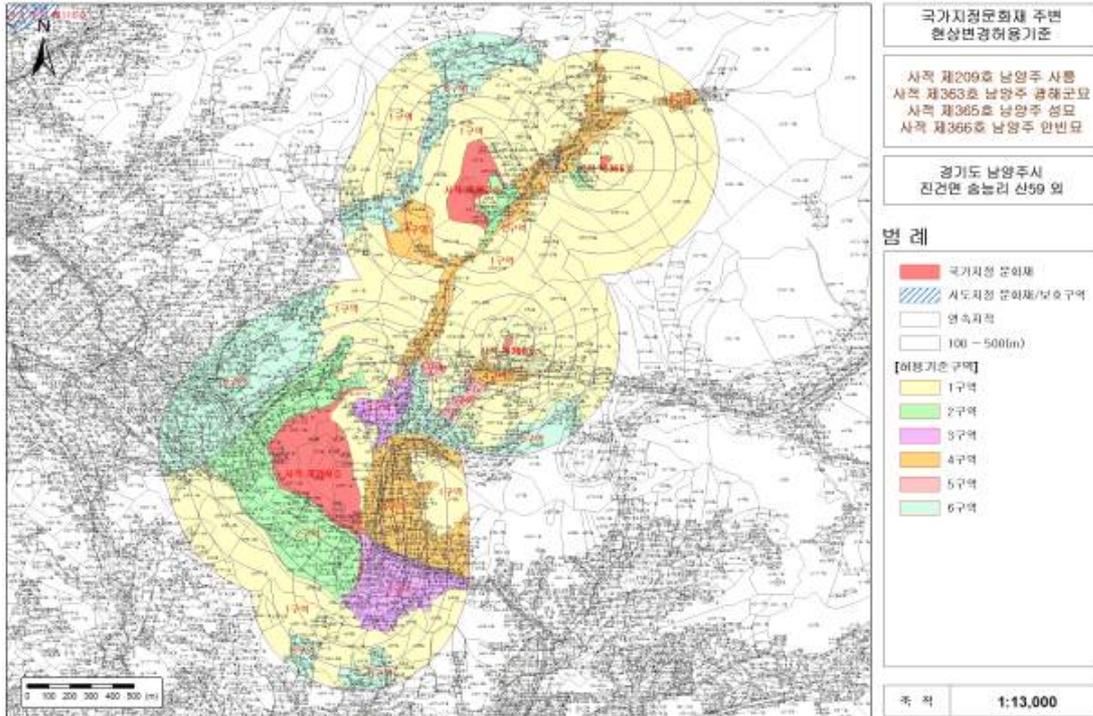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남양주 사릉, 광해군묘, 성묘, 안빈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사릉(사적 제209호), 남양주 광해군묘(사적 제363호), 남양주 성묘(사적 제365호), 남양주 안빈묘(사적 제366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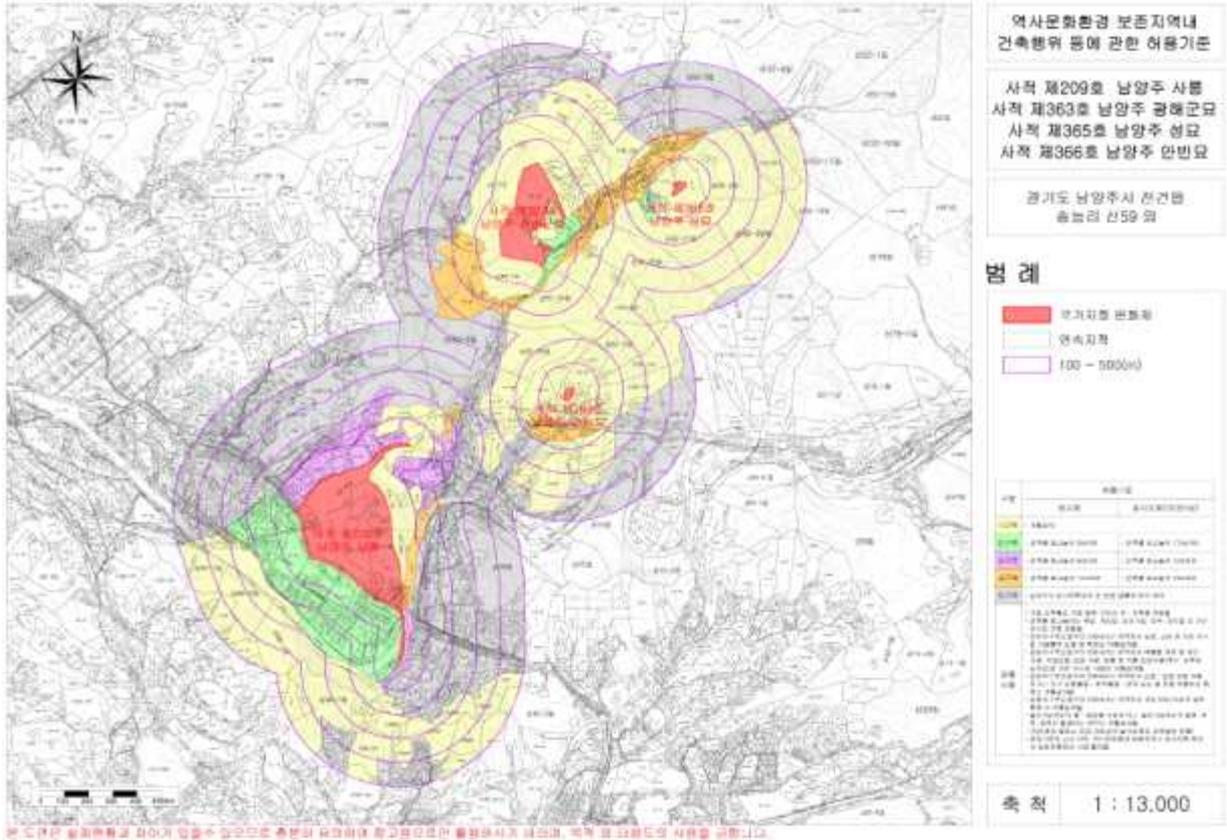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6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찰해 유역(역사)별 점 교역(역사)만 활용(역사)하게 처리(역사). 목적 및 타당도의(역사)를(역사) 합니다.

○ 신청안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1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남양주 사릉, 남양주 광해군묘, 남양주 성묘, 남양주 안빈묘의 역사문화환경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릉은 사방으로 도로로 둘러싸여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임.
- 사릉 북쪽에는 안빈묘가 동남측과 남측으로 도로가 지나며, 북동은 임야가 있음. 북쪽의 광해군 묘는 주변으로 임야가 둘러지고 그 밖으로 석릉이 임야에 둘러싸여 있음. 이 4개소의 사적 주변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며, 계곡 일부에 주거지역이 선포되어 있음.
- 사릉의 경우, 전면 안산이 일체성의 차원에서 개별심의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기존 범위 내 개발이 허용되어도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단, 북측의 도로로 단절된 임야는 일체성·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함.
- 안빈묘도 전면의 안산과 배면의 임야는 일체성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서측 길 건너는 일체성 영향이 적으므로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함.

- 광해군묘는 주변의 계곡으로 구획된 범위내만 일체성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계곡 너머는 일체성·조망성이 미미하므로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함.
- 성묘 또한 일체화된 동남측의 지형은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계곡 너머의 북측은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20. 남양주 순강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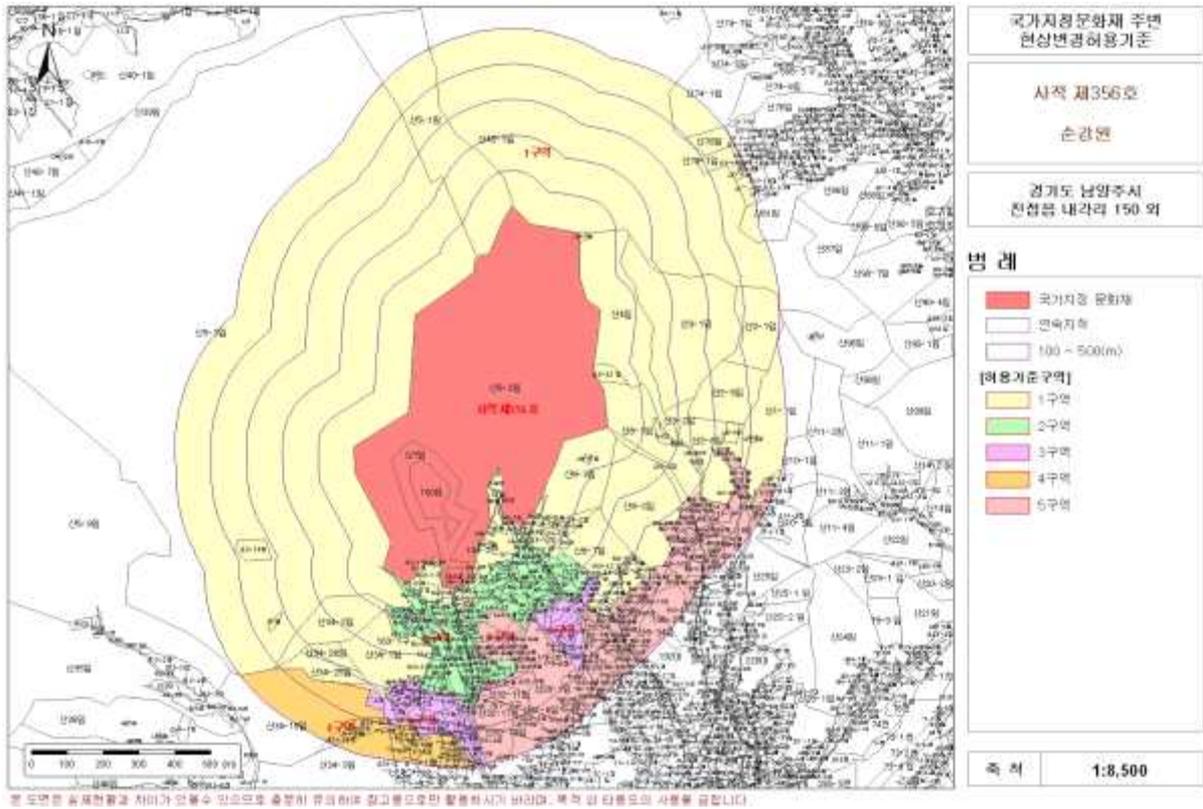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남양주 순강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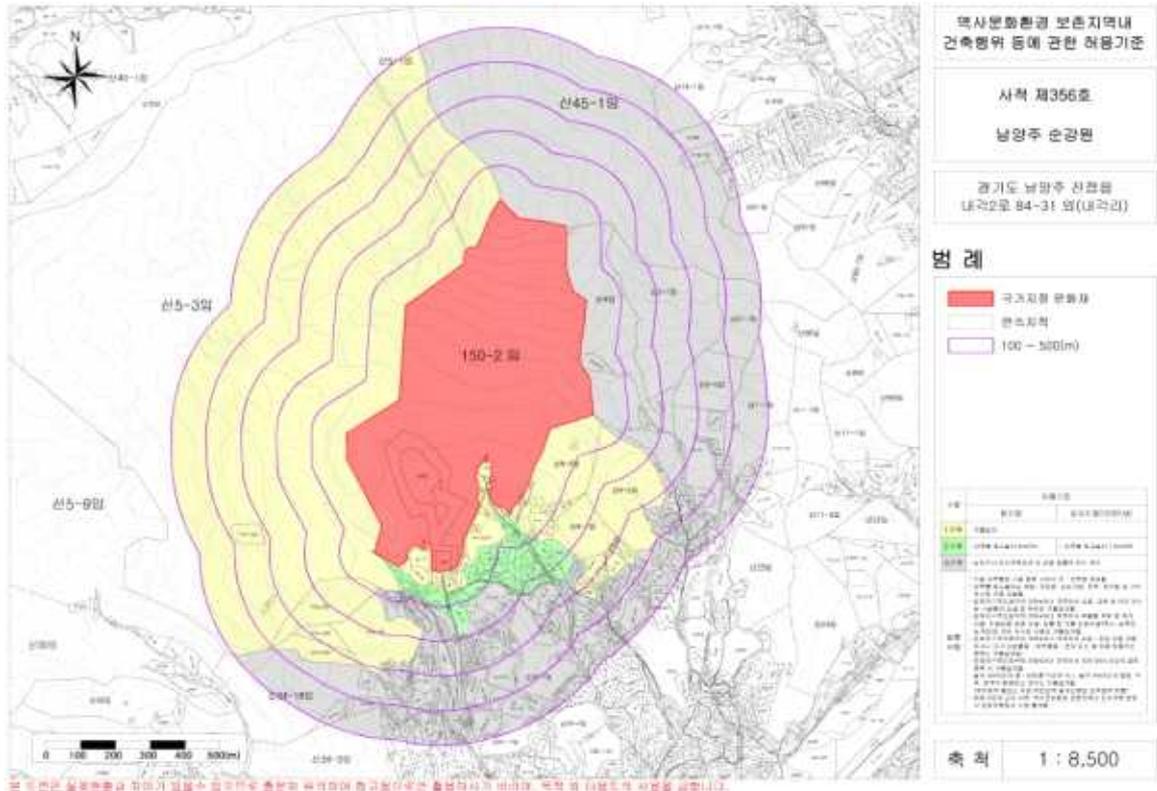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순강원(사적 제356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일부군사시설의 경우 개별심의)(수종갱신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신청안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1.1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남양주 순강원의 역사문화환경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측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북동측은 농림지역이며, 남측의 진입공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음.
  - 순강원은 북측으로 충분한 문화재 구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순강원과 연접한 서측은 일체성의 차원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북측은 충분한 이격 거리와 능선 너머로 조망성이 미미하므로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단, 원 주변에 건축이 가능하다더라도 지형이 변형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3m 이상의 절성토의 경우 개별심의 하는 내용을 공통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2) 주민의견서 2건
  - 순강원 주변 내각리 산8-13, 산8-3의 허용기준을 완화 요청(김○○, 조○○)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산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타 부분은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21. 남양주 영빈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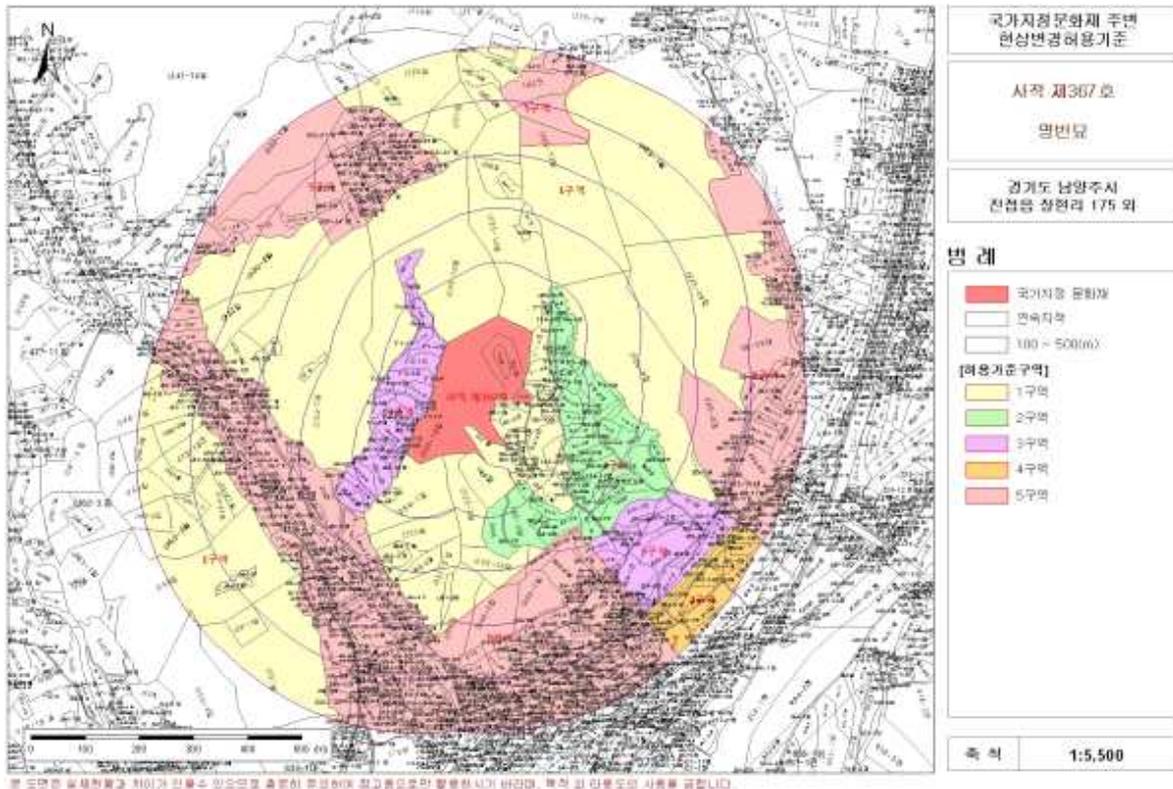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경기도 남양주 영빈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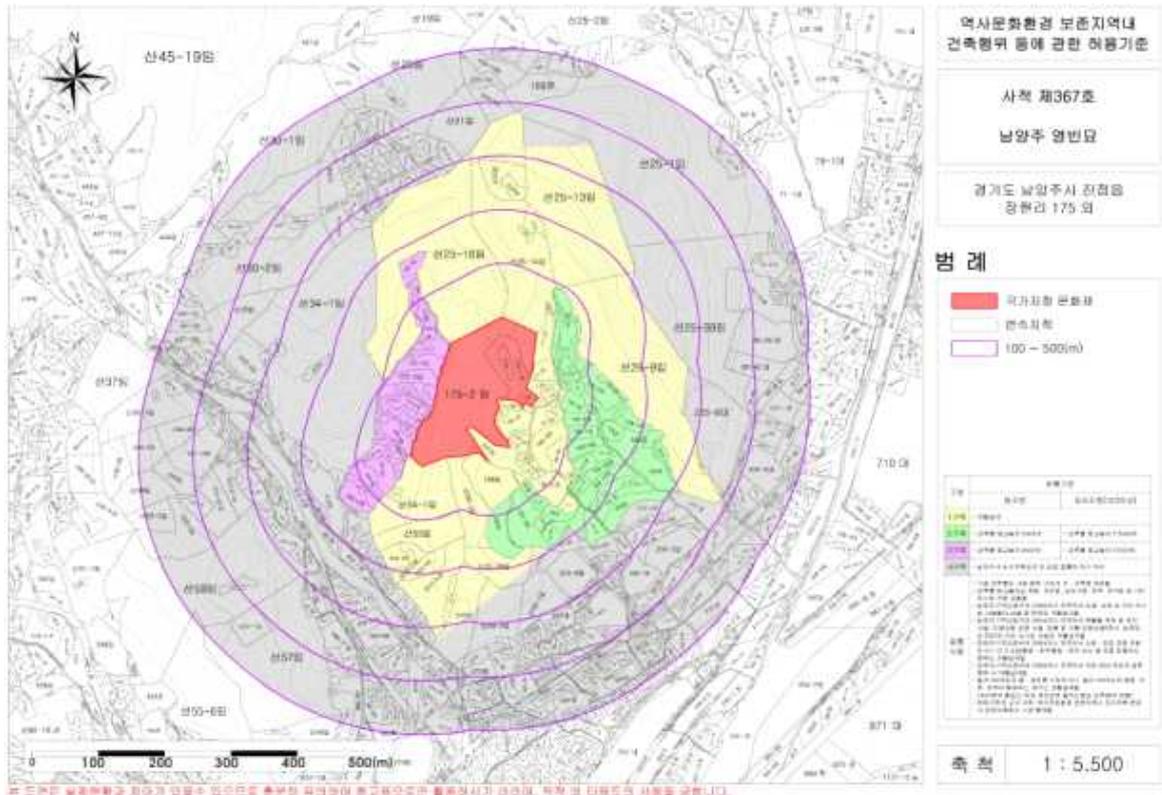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제36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수종갱신 허용)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주택만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5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신청안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li> <li>○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1.1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남양주 영빈묘의 역사문화환경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측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동남측은 주거지역 동측으로는 계곡을 끼고 주변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음.
  - 일체성에서 남측과 북측의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동측의 계곡 넘어, 서측의 능선 넘어는 조망성·일체성 차원에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그 외 연접지역은 경관의 유지 측면에서 현황의 허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단, 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지형이 변형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3m 이상의 절성토의 경우 개별심의 하는 내용을 공통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하되 우백호는 현행 유지

## 22.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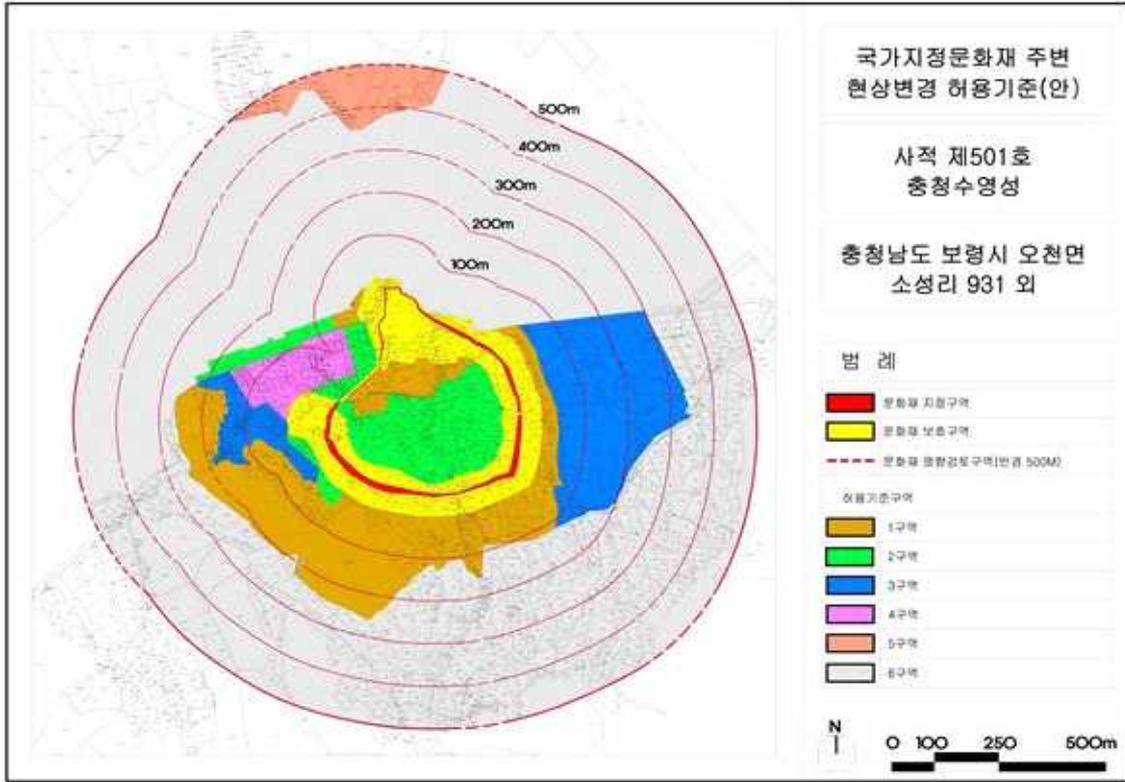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으로,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보고드리고 심의받고자 함
  - 사적분과 검토('16.12.14) : 원안가결
  - 행정예고('16.11.23~12.12) : 의견제출 5건

###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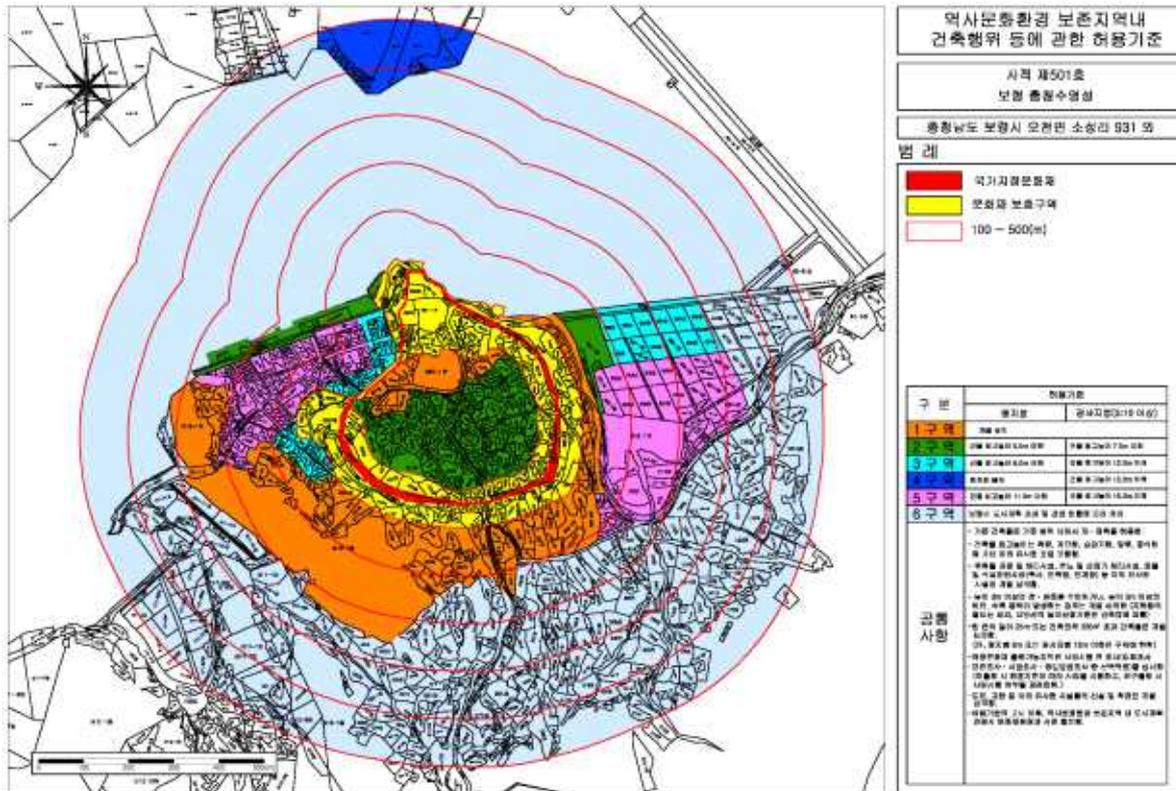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성 내부 건축행위시 관계전문기관 시굴조사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성 내부 건축행위시 관계전문기관 시굴조사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평지붕 불허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4구역	○ 평지붕 불허	○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6구역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보령 충청수영성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수영성의 건너편은 조망성이 중요한 곳으로 경사지붕에 한하여 2층 규모로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충청수영성을 둘러싼 남측의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동측의 논은 한켜를 1층 규모로 하고, 바닷가측은 2층규모 그 안쪽은 3층 규모로 한다면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충청수영성의 서측은 기존 마을이 잔존하는 곳으로 연결하여 2층 규모, 바닷가측은 1층 규모 그 안쪽은 3층 규모로 한다면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됨.

**(2)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16.12월/5건)**

- 보령 충청수영성 바다 건너 천북면까지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반대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3. 서울 헌릉과 인릉 주변 장애인 공용 주차장 설치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사적 제194호 「서울 헌릉과 인릉」 주변 장애인 재활자립장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헌릉과 인릉 주변 문화재구역과 연결한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구역)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공용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헌릉과 인릉(사적 제194호)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길 42
- (3) 신청내용<장애인 재활자립장 공용 주차장 조성>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1561 외 2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278㎡ / 건축면적: 18㎡ / 연면적: 18㎡
    - 건축구조 : 경량구조
    - 건축규모 : 주차관리실 1동, 지상1층(높이 : 3m)
    - 기타공사 : 시멘트 포장 및 주차라인 57대 설치 등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4.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사무소 건립

###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제137호 / 1964.07.11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08

(3) 신청내용<사무소 건립>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부근리 81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대지/신청면적:3,107.6㎡/2,115.6㎡
- 건축면적:3개동 407.1㎡(1동:155.25㎡, 2동:155.25㎡, 3동96.6㎡)
- 경량 철골구조
- 높이 : 5.5m

(4) 신청인 의견

- 전체 시설물 관리는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며, 불법적인 전용면적의 확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임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5.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조성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사적 제396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 외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73-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m 이격/1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 건축규모
    - 대지면적 991㎡(연면적/건축면적 : 190.08㎡/190.08㎡)
    - 높이/규모 : 6.05m/ 지상 1층, 평지붕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6.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0.26. 부결 : 신축높이 과다
- '16.12.1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39-6,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모화리)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51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16.12.14(부결)	금차	비고
건축(연)면적	2동, 84.06㎡, 168.12㎡	1동, 84.06㎡	
건축구조	목조, 기와지붕	목조, 기와지붕	
층수 및 높이	1층, 6.4m	1층, 6.4m	

### (4) 신청인 의견

- 본 신청지는 실소유자가 김해김씨종친회로서 원로 종친회원들의 개별주택을 신축하고자 함. 원로 종친회원들이 개별주택을 신축하여 노후대비와 인접한 종친회 재실 관리 및 향후 종친회 활동의 원활화를 위함.

- 또한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기와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어지럽게 자연상태로 방치된 관문성 주변의 미관 개선 및 사적지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도 않음. 시행시에도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1.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관문성에서 10m 이격된 곳에 지상1층, 면적 84.06㎡의 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이 일부 평탄화되어 있고, 경관상 관문성에서 먼 곳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되나, 관문성과 인접한 곳에 신축되는 주택은 경관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문성에서 먼 곳의 1개동만 신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7.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종교시설(사찰) 건립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종교시설(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종교시설(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 '16.12.1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1974.12.1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
- (3) 신청내용<종교시설(사찰)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000(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구분	'16.12.14(부결)	금차	비고
건축면적	99㎡	99㎡	차폐조경
건축구조	경량철골구조, 함석기와	경량철골구조, 기와형 칼라강판	
층수 및 높이	1층, 7.3m	1층, 5.3m	

### (4) 신청인 의견

- 천북면 화산리에 위치한 곳으로 종교시설(사찰)을 신축하여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변 현상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전통건축 형태로 구성하였음.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28.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나정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제245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 외 36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32-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1동, 86.2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옥골기와지붕
    - 층수 등 : 지상1층, 6.7m
- (4) 신청인 의견
  - 노후에 쾌적한 주거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함.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9.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주차장 조성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2.14.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및 내남면 용장리 등
- (3) 신청내용<주차장 조성>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132-45, 1016-9, 1132-41번지, 경북 경주시 남산동 754-2, 737-2, 1156-229, 1156-226, 1156-219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2구역, 공통사항(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1976㎡(122대)
    - 토 공 : 터파기 512㎡, 되메우기 73㎡
    - 포장공 : 잔디블럭 포장 A=1,976㎡, 도로 경계석 L=1,492m
    - 성토최고 높이 : 현재 도로높이와 동일
- (4) 신청인 의견
  - 산림환경연구원 주차장 협소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상기사업 내용은 산림환경연구원 앞을 지나는 2차선 직선도로의 양측에 있는 빈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목을 없애고 폭 2.7m로 잔디블록을 포장하는 것임.(총길이 약 1,500m)  
(잔디블록은 주차로 인한 지면의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사업부지는 문화재에서 18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도로구간으로 사업내용에 의해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관목 제거 및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구간은 성토되어 있는 곳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님)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30.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자전거 도로 등 연장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에 자전거 도로 등을 연장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천군이 기 허가받았던 초성~차탄 자전거길의 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자전거 도로 및 보도 연장>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03-8번지 등(문화재구역)
  - 시설개요
    - 길이 : 500m
    - 폭 : 3.0~3.5m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 31.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노인복지시설 증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1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3층으로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8차 소위원회('16.9.28), 13차 위원회('16.11.23), 14차 위원회('16.12.14)에서 부결된 사항을 설계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4-1 일원
- (3) 신청내용<노인복지시설 증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8{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구분	기존	1차('16.9.28)	2차('16.11.23)	3차('16.12.14)	금회 신청안
대지면적	1,227.00㎡	1,227.00㎡	1,227.00㎡	1,227.00㎡	1,227.00㎡
건축면적	409.33㎡	490.14㎡	490.14㎡	490.14㎡	465.67㎡
연면적	409.33㎡	1,212.93㎡	1,123.35㎡	1,123.35㎡	1,074.41㎡
층수	지상 1층	지상 4층	지상 3층	지상 3층	지상 3층
높이	4.40m	15.30m	15.30m	10.65m	8.95m
구조	벽돌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승강기	없음	1대	1대	1대	1대
지붕	평지붕	평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축 부분 시굴조사 필요

## 32.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및 사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63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4, 2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058㎡(건축부지 784㎡, 도로부지 274㎡)
    - 건축면적/연면적 : 155.32㎡/199.79㎡
    - 층수/높이 : 지상2층/10.0m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평지붕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33.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단독주택 및 사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당초 1층 단독주택을 허가 받았으나, 1층은 사무소로, 2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63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4, 2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구분	기존	변경 신청안	비고
대지면적	872.00㎡ (부지 843㎡, 도로 29㎡)	1,058.00㎡ (부지 784㎡, 도로 274㎡)	186㎡ 증가
건축면적	104.18㎡	155.32㎡	51.14㎡ 증가
연면적	104.18㎡	199.79㎡	95.61㎡ 증가
층수	지상 1층	지상 2층	1층 증가
높이	7.57m	10.0m	2.43m 증가
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형태 변경

## 라. 의결사항

###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34. 연천 호로고루 주변 공장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천 호로고루 주변에서 공장(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 2006.1.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 (3) 신청내용<공장 신축>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문화재보호구역과 연결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574㎡(조성지 3,369㎡, 도로 205㎡)
    - 건축면적/연면적 : 1,592.80㎡/1,592.80㎡
    - 층수/높이 : 지상1층/7.70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보호구역 검토 위한 현지조사 필요

## 35. 관문성 주변 자동염수분사장치 가설건축물 설치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북구 중산동 산43번지 외
- (3) 신청내용<자동염수분사장치 및 가설건축물 설치>
  - 위치 : 울산시 북구 대안동 산183-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0m 이격/1구역)
  - 시설현황
    - 펌프하우스 및 용액 저장탱크(10,000L) 1개소 : 3.35m×7.10m×3.58m(높이)
    - 자동살포장치 : L=800m(분사노출 15m 간격)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6.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신청한 사항임
  - 12차 사적분과위원회('16.11.09.) 부결 : 신축건물 높이 과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50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건축규모

구분	이전신청('16.11월)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105.00㎡	좌동	
연면적/건축면적	179.55㎡/54.80㎡	174.06㎡/좌동	
높이/규모	13.15m(지하 포함) /지하 1층, 지상3층	10.99m(지하포함) /지하 1층, 지상2층(다락층 별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사업신청 구역은 성벽에서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건축 예정지 인근의 건물(울산시 중구 동동 506번지)의 양쪽 날개 높이보다 높지않게 건물의 높이가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경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위원 ○○○, ○○○)

- 사업신청 구역은 동벽에 인접되어 있으며, 동벽과 사업신청구역 사이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빈공간임
- 따라서 제출된 사업계획은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건물 높이 과다

### 37.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신청한 사항임
  - 4차 사적분과 소위원회('16.5.25.) 부결 : 신청부지 인근부분이 동문지임을 감안하여 층고제한 필요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240-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m 이격)
  - 건축규모

구분	이전신청('16.5월)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113.00㎡	좌동	
연면적/건축면적	124.50㎡/	111.66㎡/66.86㎡	
높이/규모	11.2m/지상3층	8.4m/지상 2층(다락층 별도)	

#### (4) 신청인 의견

- 본 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 개선과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부지가 113㎡으로 너무 협소하여 부득이 2층 건물의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상기 건축예정지가 동문지 앞(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전면 경사를 주든지 아니면 높이를 낮추든지 하여, 동문이 복원되었을 때,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지조사의견('16.05.03/문화재위원 ○○○)

- 상기 건축부지는 울산 경상좌도영성의 동문으로부터 약 17m 이격된 지역으로 울산시 중구청에서는 상기 부지 인근이 동문지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층고를 2층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높이 조정 필요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5-038

### 1.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복원 관련 고증기본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복원을 위한 고증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고증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5.9. 문화재위원회 보고결과 조건부 가결(관계 전문가 설계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한 사항임.
- 문루형식(당초 평거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발굴조사('15.12.09.~'16.08.03.)를 실시한 결과 조선초기 양식이 '개거식'으로 확인되어 기본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 (3) 검토사항<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고증 기본계획(안) 검토>
  - 동문 문루형식 : 평거식 → 개거식

#### 라. 참고사항

##### (1) 동문복원 추진경과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고증기본계획 용역('15년)
  - 문화재위원회 보고 “조건부 가결(관계 전문가 설계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15.09.09.)
- 문루형식(평거식) 이견에 따른 제4차 발굴조사 실시('15.12.09.~'16.08.03.)
-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루 형식 변경(평거식→개거식) 및 설계변경 승인 요청(울산 중구→수리기술과)

- 설계승인 요청에 대한 우리청 수리기술과 회신  
(기 복원정비계획 및 문루 및 성곽의 복원시점 등 재검토 요청('16.11.28))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동문복원 고증기본계획(안) 변경 검토 요청  
( '16.12.15., 울산 중구→보존정책과)
  - 수리기술과 보완요청에 따라 고증기본계획 변경사항 검토 요청

**(2) 수리기술과 보완요청 사항(2016.11.28)**

-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고건축, 성곽, 고고학(발굴기관), 토목(지반) 분야 관계전문가 회의 및 고증을 통한 상세한 검토를 거쳐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금회 복원설계, 기 복원정비방안,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의 비교 및 정비계획 반영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함(병영성 복원·정비 원칙, 방안 등)
  - 문루 및 성곽의 복원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기 복원정비구간 비교 검토, 후대 유구 보존·정비 방안 등 검토도 필요함
  - 문헌 및 지도 등 복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고증자료에 대한 조사
  - 성곽(문루와 옹성의 육축, 체성)의 높이, 옹성 복원 길이, 여장 복원 여부 등
  - 문루 복원 관련 사항(형태, 양식 등)에 대한 충분한 고증 자료 조사 및 검토 등
  - 성토구간 성곽 축조시 침하 등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등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5-039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 변경사항 - 사업면적 변경 : (당초) 63,200.40㎡, (변경) 63,416.00㎡ - 연면적 변경 : (당초) 184,416.59㎡, (변경) 184,717.90㎡ - 놀이터, 도서관 등 위치 변경 ○ 허가기간 : 2016.12.19.~2019.10.31.	허가	'16.12.19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	<판소리 명창거리 조성사업> ○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130m 이격 /1구역) ○ 내용 - 매표소 개축(기존 건물 철거) : 가로4.03m×세로2.87m×높이2.6m - 신재효 표지석 : 가로1.89m×높이1.5m×폭0.71m - 안내판 설치 : 지름 0.9m × 높이 2m - 명창 표지석(지면 매립) : 0.3m×0.35m - 33개 등	허가	'16.12.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경기도 파주시	○○○	<p>&lt;근린생활시설 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671-3 외 6(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li> <li>○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동 조성</li> <li>○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지적 23,009,00㎡, 조성 4,129.00㎡, 도로 609.00㎡</li> <li>- 건축면적/연면적 : 700㎡(각 100㎡)</li> <li>- 층수/높이 : 각 지상 1층/4.5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7.12.18.</li> </ul>	허가	'16.12.19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	<p>&lt;이동통신 중계기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 중계기 2개소 설치</li> <li>○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관주 2개소 설치 : 10m 1개소, 15m 1개소</li> <li>- 장비패드 2개소 설치 : 각 12㎡</li> <li>- 전기관로 설치 : 대동사 부분 220m, 시단봉 부분 470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7.12.18.</li> </ul>	허가	'16.12.19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경남 남해군	○○○	<p>&lt;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07</li> <li>○ 기간 : (당초) 2011.07.15~2016.12.31, (변경) 2011.07.15 ~ 2017.06.30</li> </ul>	허가	'16.12.21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	<p>&lt;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일원 (문화재구역 내외)</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보드 : 1.6m * 1.75m</li> <li>- 키오스크 : 0.82m * 1.8m</li> <li>- Wi-Fi 구축 : 무선 AP 20개(기존 가로등에 설치)</li> </ul> </li> </ul>	허가	'16.12.15.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	<p>&lt;시골장터 운영기간 연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1-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m 이격 /4구역)</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 몽골텐트 20동</li> <li>- 운영기간 : 2017.1.1~2017.12.31</li> </ul> </li> </ul>	허가	'16.12.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대중골프장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li> <li>○ 변경사항 : 골프코스 변경, 티하우스 위치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코스 변경 :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사도, 토목공사량 등 고려 코스 변경</li> <li>- 티하우스 위치 변경 : (당초) 문화재 구역에서 330m 이격, (변경) 문화재 구역에서 860m 이격</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3.~2017.12.12.</li> </ul>	허가	'16.12.1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신대~학동간 도로 확포장(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49-11 일원</li> <li>○ 변경사항 : 돌쌓기 구간폭이 협소하여 당초 조정석 쌓기에서 성곽돌쌓기로 변경</li> <li>○ 허가기간 : 2016.12.13.~2017.12.12.</li> </ul>	허가	'16.12.1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142-3 외</li> <li>○ 변경사항 : 건축물 위치 변경, 진입 도로 폭 및 옹벽 조정</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7.12.31.</li> </ul>	허가	'16.12.19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다세대주택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3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6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514㎡</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83.12㎡/488.28㎡</li> <li>- 층수/높이 : 지상4층/14.6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21.~2018.11.30.</li> </ul>	허가	'16.12.2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lt;다세대주택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3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561㎡</li> <li>- 건축면적/연면적 : 183.12㎡/488.28㎡</li> <li>- 층수/높이 : 지상4층/14.6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21.~2018.11.30.</li> </ul>	허가	'16.12.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3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56㎡ - 건축면적/연면적 : 183.12㎡/488.28㎡ - 층수/높이 : 지상4층/14.6m ○ 허가기간 : 2016.12.21.~2018.11.30.	허가	'16.12.2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5-7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507㎡ - 건축면적/연면적 : 183.12㎡/488.28㎡ - 층수/높이 : 지상4층/14.6m ○ 허가기간 : 2016.12.21.~2018.11.30.	허가	'16.12.2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16 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96㎡ - 건축면적/연면적 : 183.12㎡/488.28㎡ - 층수/높이 : 지상4층/14.6m ○ 허가기간 : 2016.12.21.~2018.11.30.	허가	'16.12.21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2017 제야음악회 및 제야의 종 타종식> ○ 위치 : 경남 대성동 시민의 종 광장 ○ 사업내용 - 천막(4m*4m) 16개소, 무대(14m*7m*1m), 음향설치, 영상(200인치 LED 2SET), 무소음발전기(150KW*2대) 등 ○ 기간 : 2016.12.31~2017.1.1(2일간)	허가	'16.12.13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전남 나주시	○○○	<임시 주차장 조성>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5-4, 5(문화재구역으로부터 83m 이격/1구역) ○ 내용 - 쇄석자갈 포설(면적 3,925㎡ / 포설 두께 20cm)	허가	'16.12.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	<p>&lt;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li> <li>○ 변경사항 : 동수 증가,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수변경 : (당초) 2동, (1차변경) 1동, (금회변경) 3동</li> <li>- 건축면적 변경 : (당초) 196.70㎡, (1차변경) 74.66㎡, (금회변경) 165.18㎡</li> <li>- 연면적 변경 : (당초) 263.40㎡, (1차변경) 74.66㎡, (금회변경) 238.84㎡</li> <li>- 높이 변경 : (당초) 2층, 7.95m, (1차변경) 1층, 4.7m, (금회변경) 1층</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7.12.31.</li> </ul>	허가	'16.12.19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	<p>&lt;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6 외 7(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0m 이격)</li> <li>○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지적 4,667㎡, 신청면적 3,404㎡, 도로면적 182㎡</li> <li>- 건축면적/연면적 : 473.13㎡/473.13㎡</li> <li>- 높이 : 4.7~5.6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8.12.31.</li> </ul>	허가	'16.12.19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경기도 연천군	○○○	<p>&lt;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0</li> <li>○ 변경사항 : 건축계획 및 진출입로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변경 : (당초) 799㎡, (변경) 363㎡</li> <li>- 건축면적 변경 : (당초) 97.56㎡, (변경) 59.20㎡</li> <li>- 연면적 변경 : (당초) 97.56㎡, (변경) 98.80㎡</li> <li>- 층수 변경 : (당초) 1층, 5.6m, (변경) 2층, 5.6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7.12.18.</li> </ul>	허가	'16.12.1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	<p>&lt;공공미술작품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나주시 금계동 및 교동 일원(문화재구역)</li> <li>○ 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작품명</th> <th style="width: 20%;">규격</th> <th style="width: 6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곰탕 박물관</td> <td>3m×6m×2.4m</td> <td>나주곰탕 유래 설명 및 쉼터</td> </tr> <tr> <td>야외 마을 도서관</td> <td>3m×3m×3.2m(2동) 이동식 벤치 등</td> <td>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td> </tr> <tr> <td>거시기 가게</td> <td>3.5m×4m×2.3m</td> <td>유동적 물건 판매 공간</td> </tr> <tr> <td>마을 벤치</td> <td>3.6m×0.4m×0.7m (2개)</td> <td>나주 고지도 모형 의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작품 존치기간은 2018.12.31 까지로 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허가 받을 것</li> <li>-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철거할 것</li> </ul> </li> </ul>	작품명	규격	내용	곰탕 박물관	3m×6m×2.4m	나주곰탕 유래 설명 및 쉼터	야외 마을 도서관	3m×3m×3.2m(2동) 이동식 벤치 등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	거시기 가게	3.5m×4m×2.3m	유동적 물건 판매 공간	마을 벤치	3.6m×0.4m×0.7m (2개)	나주 고지도 모형 의자	조건부 허가	'16.12.15
			작품명	규격	내용															
곰탕 박물관	3m×6m×2.4m	나주곰탕 유래 설명 및 쉼터																		
야외 마을 도서관	3m×3m×3.2m(2동) 이동식 벤치 등	커뮤니티 및 휴식 공간																		
거시기 가게	3.5m×4m×2.3m	유동적 물건 판매 공간																		
마을 벤치	3.6m×0.4m×0.7m (2개)	나주 고지도 모형 의자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도 용인시	○○○	<p>&lt;주유소 부지조성 및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57-3(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9m 이격)</li> <li>○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193㎡</li> <li>- 건축면적/연면적 : 232.38㎡/353.28㎡</li> <li>- 층수/높이 : 지상 2층/7.35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6.12.19.~2017.12.18.</li> </ul>	허가	'16.12.19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p>&lt;서봉총 발굴조사(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08-1 일원 (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조사면적 : 5,200㎡</li> <li>- 토적예정면적 : 2,500㎡(50m×50m)</li> <li>- 임시사무실 설치 : 컨테이너 (3×9×2.4m) 2동 *지하 굴착 없음</li> <li>- 웬스 설치 : 높이 1.5m, 길이 285m</li> </ul> </li> <li>○ 변경사항 : 기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2015.12.15~2016.12.31</li> <li>- 변경 : 2015.12.15~2017.12.31</li> </ul> </li> </ul>	허가	'16.12.1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	<p>&lt;발굴조사(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5번지 일원</li> <li>○ 조사면적: 15,000m<sup>2</sup></li> <li>○ 변경사항 :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2014. 3. 17.~2016. 12. 31.</li> <li>- 변경 : 2014. 3. 17.~2018. 12. 31</li> </ul> </li> </ul>	허가	'16.12.20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전남 여수군	○○○	<p>&lt;건물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여수시 선원동 439-1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2구역)</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131.35m<sup>2</sup>(연면적 262.7m<sup>2</sup>)</li> <li>- 건물높이 : 6.3m(지붕마감재 끝선까지의 높이)</li> </ul> </li> </ul>	허가	'16.12.15

#### 다. 의결사항

- 접수